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4552

제출년월일 : 2026. 3. 6.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2009. 8. 7.)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54호(2015.4.3.) 및 제2015-202호(2015.12.11.), 제2016-29호(2016.03.18.), 제2016-148호(2016.10.25.), 제2016-182호(2016.12.2.), 제2018-4호(2018.01.05.), 제2018-134호(2018.07.02.), 제2019-80호(2019.05.01.), 제2019-111호(2019.06.12.), 제2020-152호(2020.06.24.), 제2020-283호(2020.11.17.), 제2020-353호(2020.12.31.), 제2021-74호(2021.03.29.), 제2021-874호(2021.06.30.), 제2021-951호(2021.09.28.), 제2021-1012호(2021.11.19.), 제2022-74호(2022.04.22.), 제2022-122호(2022.06.15.), 제2022-139호(2022.06.29.), 제2022-172호(2022.08.02.), 제2023-28호(2023.02.23), 제2023-34호(2023.02.28.), 제2023-56호(2023.03.24.), 제2023-64호(2023.03.31.), 제2023-91호(2023.05.16.), 제2023-137호(2023.07.11.), 제2023-150호(2023.07.27.), 제2023-157호(2023.08.14.) 제2024-126호(2024.05.21.), 제2024-138호(2024.05.31.), 제2024-166호(2024.06.26.), 제2024-232호(2024.09.25.), 제2024-247호(2024.10.11.), 제2024-266호(2024.10.31.), 제2024-297호(2024.12.06.),

제2025-62호(2025.03.27.), 제2025-96호(2025.04.28.), 제2025-106호(2025.05.14.), 제2025-160호(2025.06.30.), 제2025-193호(2025.09.03.), 제2025-195호(2025.09.03.), 제2025-226호(2025.09.23.), 제2026-9호(2026.01.07.), 제2026-22호(2026.01.28.), 제2026-29호(2026.02.10.), 제2026-37호(2026.02.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 존치관리I구역 일부를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 주민제안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2. 주요내용

가. 지구명 :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도마동, 변동 일원

다. 면 적 : 2,218,714.0㎡

라. 주요 변경내용

1) 도마·변동14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도마·변동14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을 고려하여 존치관리I구역(163,818.0㎡) 중 도마솔직주락 허브(2,072.8㎡) 및 도솔마을어울림플랫폼(604.2㎡)을 제외한 161,141㎡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구역지정을 위한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 수립
- 주변현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 기반시설 설치계획

- 주민제안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마. 추진경위

- 2007. 08. 31.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14호)
- 2009. 08. 07.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
- 2015. 04. 03.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일몰제 대상구역 우선해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54호)
- 2015. 12. 1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전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202호)
- 2016. 03. 18.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8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29호)
- 2016. 10. 25.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8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48호)
- 2016. 12. 02.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82호)
- 2018. 01. 05.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4호)
- 2018. 07. 02.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34호)
- 2019. 05. 0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 · 1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80호)

- 2019. 06. 12.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8 · 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11호)
- 2019. 06. 12.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8 · 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11호)
- 2020. 03. 1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49호)
- 2020. 06. 0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
- 2020. 06. 2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52호)
- 2020. 11. 1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6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83호)
- 2020. 12. 3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4 · 5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53호)
- 2021. 03. 2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74호)
- 2021. 06. 30.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874호)
- 2021. 09. 28.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951호)
- 2021. 11. 1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12호)
- 2022. 04. 22.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6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74호)
- 2022. 06. 15.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8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22호)

- 2022. 06. 29.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
- 2022. 08. 02.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72호)
- 2023. 02. 23.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6-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8호)
- 2023. 02. 28.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6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34호)
- 2023. 03. 2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4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56호)
- 2023. 03. 31.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4호)
- 2023. 05. 16.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91호)
- 2023. 07. 1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37호)
- 2023. 07. 2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5 · 6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50호)
- 2023. 08. 1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존치관리F,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57호)
- 2024. 05. 2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4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26호)
- 2024. 05. 3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38호)
- 2024. 06. 26.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66호)
- 2024. 09. 25.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5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

- 2024. 10. 11.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 2024. 10. 31.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66호)
- 2024. 12. 06.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97호)
- 2025. 03. 17.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62호)
- 2025. 04. 28.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정정고시
(도마 · 변동9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96호)
- 2025. 05. 14.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06호)
- 2025. 06. 30.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6-1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
- 2025. 09. 03.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93호)
- 2025. 09. 03.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6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95호)
- 2025. 09. 23.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226호)
- 2026. 01. 0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5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9호)
- 2026. 01. 28.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1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22호)
- 2026. 02. 10.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2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22호)
- 2026. 02. 13.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고시
(도마 · 변동3구역,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37호)

【도마・변동14구역 추진경위】

- 2023. 07. 14.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 2023. 09. 09. :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 개소
- 2024. 01. 11.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 2024. 09. 26.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 2024. 12. 23. : 도마・변동14구역 내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요청 (14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 2025. 01. 13. : 도마・변동14구역 내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요청 회신 (대전광역시 서구→14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 공유재산심의 후 별도 고지 예정
- 2025. 06. 02. : 도마・변동14구역 내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요청 회신 (대전광역시 서구→14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 도마동 519외 12필지(14,728.4㎡) 동의
- 2025. 07. 17.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14구역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 2025. 07. 17.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2025.07.17.~2025.08.18.)
- 2025. 10. 14.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계기관(부서) 재협의(2025.10.14.~2025.11.11.)
- 2025. 11. 20.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계기관(부서) 추가협의(2025.11.20.~2025.11.28.)
- 2026. 01. 29.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제안 수용(대전광역시 서구→14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 2026. 02. 23. : 도마・변동(1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2026.02.23.~2026.03.09)

바. 주민공람 및 공고

○ 공고일시 : 2026. 02. 23.

○ 공고방법 : 공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람기간 : 2026. 02. 23. ~ 2026. 03. 09.(14일 이상) / 진행중

○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

사. 향후계획

○ ‘26. 04. : 주민공청회, 변경 결정 신청(區→市)

○ ‘26. 07. : 市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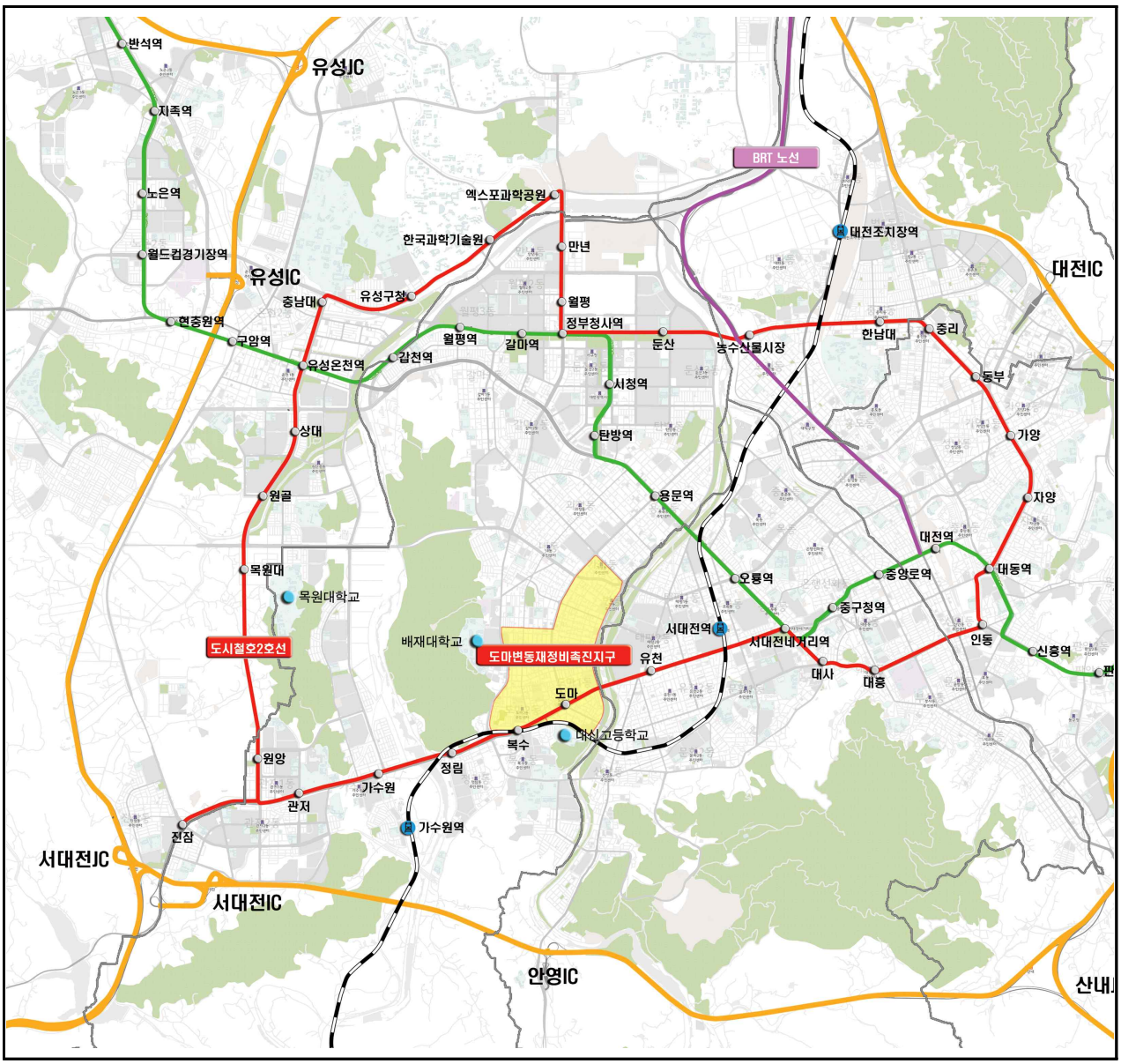
○ 목 적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균형발전 유도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도마동, 변동 일원

○ 면 적 : 2,218,714.0㎡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75,217인(30,776세대)→77,971인(32,175세대)

○ 사업기간 : 2007년 ~ 2030년(목표년도)



나.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1) 촉진구역 현황

○ 준공된 구역 : 도마·변동8, 11구역

○ 조합 설립구역 : 도마·변동1, 2, 3, 4, 5, 6, 6-1, 9, 12, 13, 16구역

○ 존치관리구역(용도지역환원)으로 관리 : 도마·변동 7일부, 10, 14, 17구역

○ 도마큰시장 주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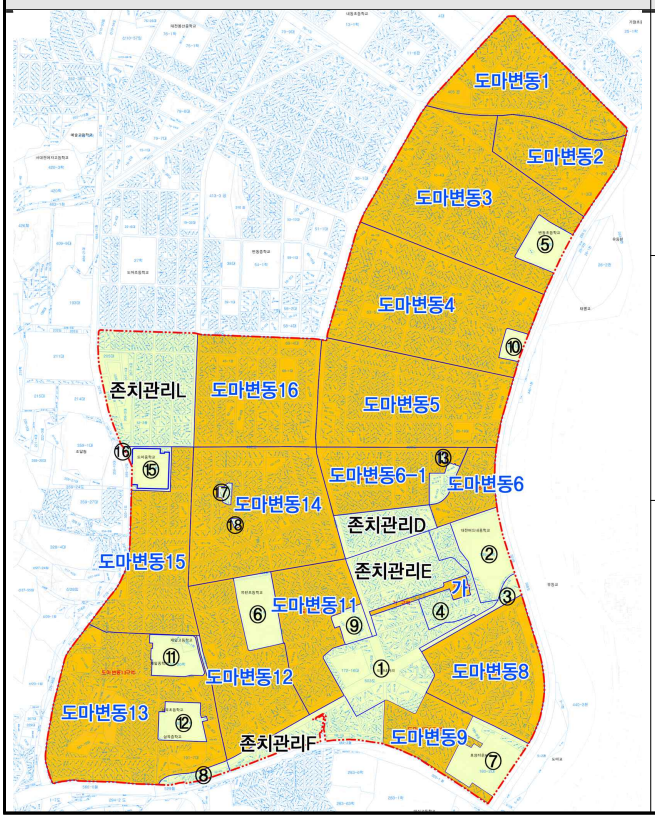
- 가구역(촉진구역)으로 지정

○ 도사시장, 버드내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등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존치관리구역 ①~⑯구역으로 지정

2) 금회 주민제안 구역

○ **존치관리구역(용도지역환원)인 도마·변동14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재지정**

-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도솔마을 어울림플랫폼은 존치관리 ⑰, ⑱구역으로 지정

촉진구역 현황도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촉진지구	2,218,714.0	-	**2,218,714.0**	100.0
	촉진구역	1,542,197.6 (15개구역)	**증) 161,141.0**	**1,703,338.6 (16개구역)**	76.8
	존치관리구역	676,516.4 (21개 구역)	**감) 161,141.0**	**515,375.4 (22개 구역)**	23.2

4.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대전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일원	2,218,714.0	-	2,218,714.0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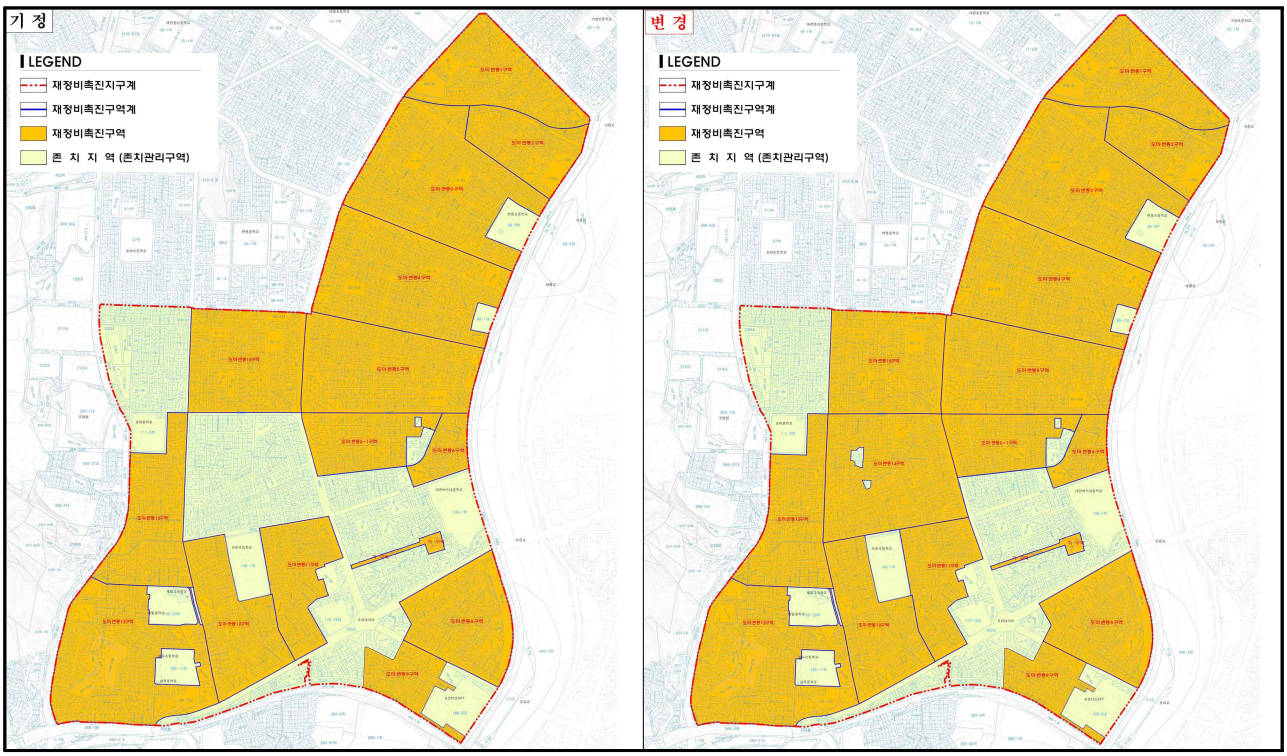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18,714.0	-	2,218,714.0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1,542,197.6	증) 161,141.0	1,703,338.6	-
	도마·변동1	105,527.5	-	105,527.5	재개발
	도마·변동2	69,667.6	-	69,667.6	재개발
	도마·변동3	192,992.0	-	192,992.0	재개발
	도마·변동4	182,001.0	-	182,001.0	재개발
	도마·변동5	157,548.3	-	157,548.3	재개발
	도마·변동6	28,958.4	-	28,958.4	재개발
	도마·변동6-1	68,055.9	-	68,055.9	재개발
	도마·변동8	102,743.0	-	102,743.0	재개발
	도마·변동9	44,013.8	-	44,013.8	재개발
	도마·변동11	76,129.0	-	76,129.0	재개발
	도마·변동12	99,920.5	-	99,920.5	재개발
	도마·변동13	178,570.6	-	178,570.6	재개발
	도마·변동14	-	증) 161,141.0	161,141.0	재개발
	도마·변동15	103,886.1	-	103,886.1	도시개발
	도마·변동16	125,229.9	-	125,229.9	재개발
	가 구역	6,954.0	-	6,954.0	도시계획시설

구 분	구역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존치관리구역	소 계	676,516.4	감) 161,141.0	515,375.4	-
	①	75,580.0	-	75,580.0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28,293.0	-	28,293.0	개별법 관리
	③	1,714.0	-	1,714.0	개별법 관리
	④	21,267.0	-	21,267.0	개별법 관리
	⑤	17,108.0	-	17,108.0	개별법 관리
	⑥	24,534.0	-	24,534.0	개별법 관리
	⑦	29,981.0	-	29,981.0	개별법 관리
	⑧	19,794.9	-	19,794.9	개별법 관리
	⑨	9,268.0	-	9,268.0	개별법 관리
	⑩	5,899.4	-	5,899.4	개별법 관리(천일월드빌아파트)
	⑪	19,526.2	-	19,526.2	개별법 관리(제일고등학교 등)
	⑫	15,350.9	-	15,350.9	개별법 관리(삼육초·중학교)
	⑬	626.7	-	626.7	개별법 관리
	⑭	358.9	-	358.9	개별법 관리(철도시설)
	⑮	13,266.5	-	13,266.5	개별법 관리(도마중학교)
	⑯	3,170.4	-	3,170.4	개별법 관리
	⑰	-	증) 2,072.8	2,072.8	개별법 관리(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⑱	-	증) 604.2	604.2	개별법 관리(어울림센터)
	존치관리D	37,318.8	-	37,318.8	개별법 관리 (최초 촉진계획시 : 도마 · 변동6구역 일부)
	존치관리E	55,619.0	-	55,619.0	개별법 관리 (최초 촉진계획시 : 도마 · 변동7구역)
	존치관리F	38,187.7	-	38,187.7	개별법 관리 (최초 촉진계획시 : 도마 · 변동10구역)
	존치관리I	163,818.0	감)163,818.0	-	개별법 관리 (최초 촉진계획시 : 도마 · 변동14구역)
	존치관리L	95,834.0	-	95,834.0	개별법 관리 (최초 촉진계획시 : 도마 · 변동1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2)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218,714.0	-	2,218,714.0	100.0	
주거지역	소 계	2,173,058.8	-	2,173,058.8	97.9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6,189.2	**감) 59,171.6**	**57,017.6**	2.6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6,857.2	**감) 88,185.6**	**448,671.6**	2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72,798.4	**증) 147,357.2**	**1,620,155.6**	73.0	
	준 주 거 지 역	47,214.0	-	47,214.0	2.1	
상업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27,271.0	-	27,271.0	1.2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8,384.2	-	18,384.2	0.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경관지구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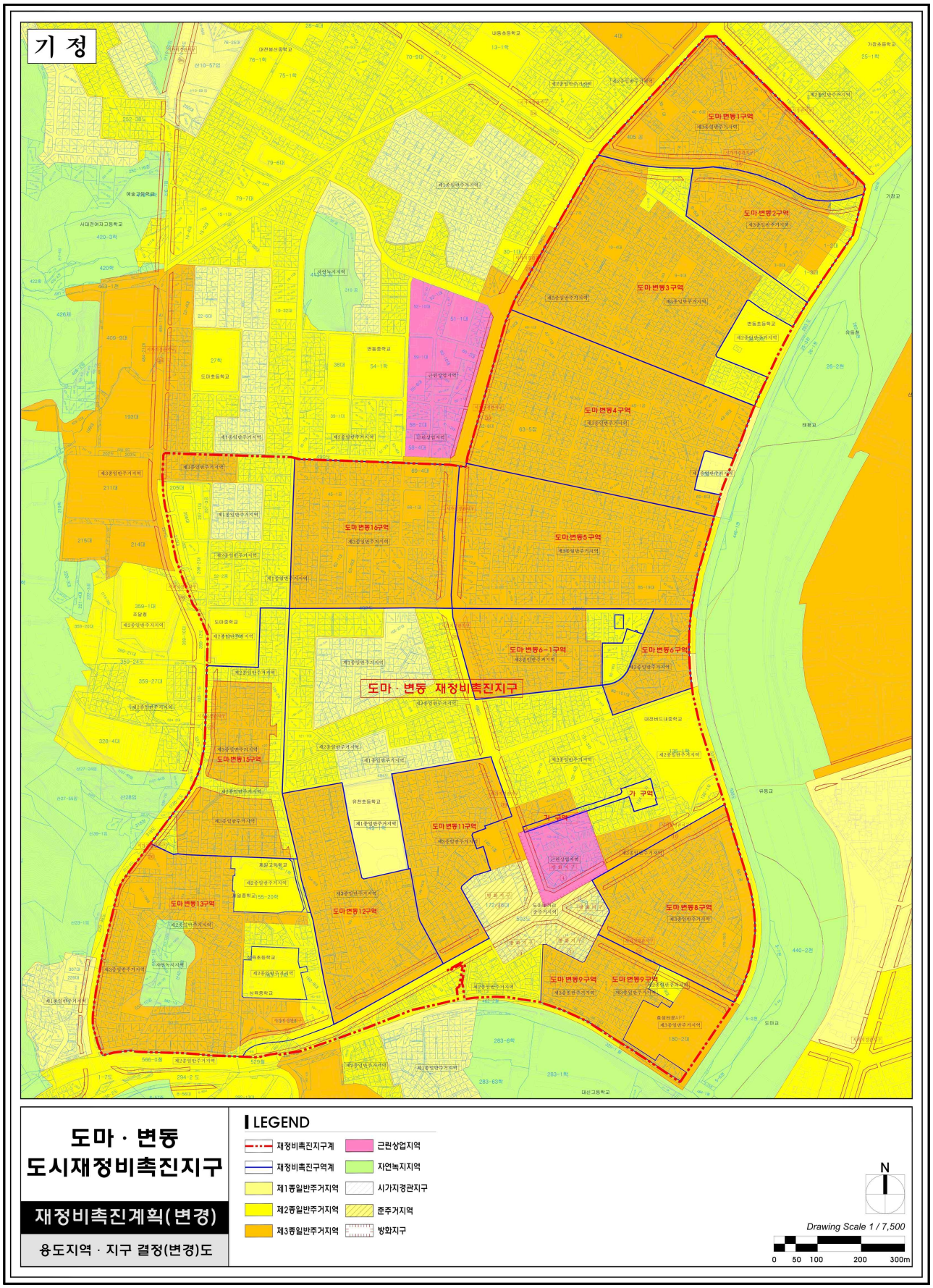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⑯	경관지구 (계백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광로2-12호선, 대로1-5호선	68,208 (6,526)	4,338 (816)	양측8m	충고167호 (1992.12.31)	-
기정	⑱	경관지구 (내동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현암교, 내동	79,208 (9,092)	4,770 (1,138)	양측8m	충고167호 (1988.8.9)	-
기정	㉖	경관지구 (도마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광로3-8호선, 대로3-13호선	73,078 (10,617)	4,568 (1,281)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기정	㉝	경관지구 (문화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3-11호선	56,636 (7,018)	3,540 (863)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기정	㊱	경관지구 (가장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내동~가장동	16,160 (3,563)	1,010 (472)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기정	㊴	경관지구 (용문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2-8호선	69,148 (22,505)	4,273 (2,343)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변경		**경관지구 (용문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2-8호선**	**69,216 (22,573)**	**4,281 (2,351)**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 ( )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 및 연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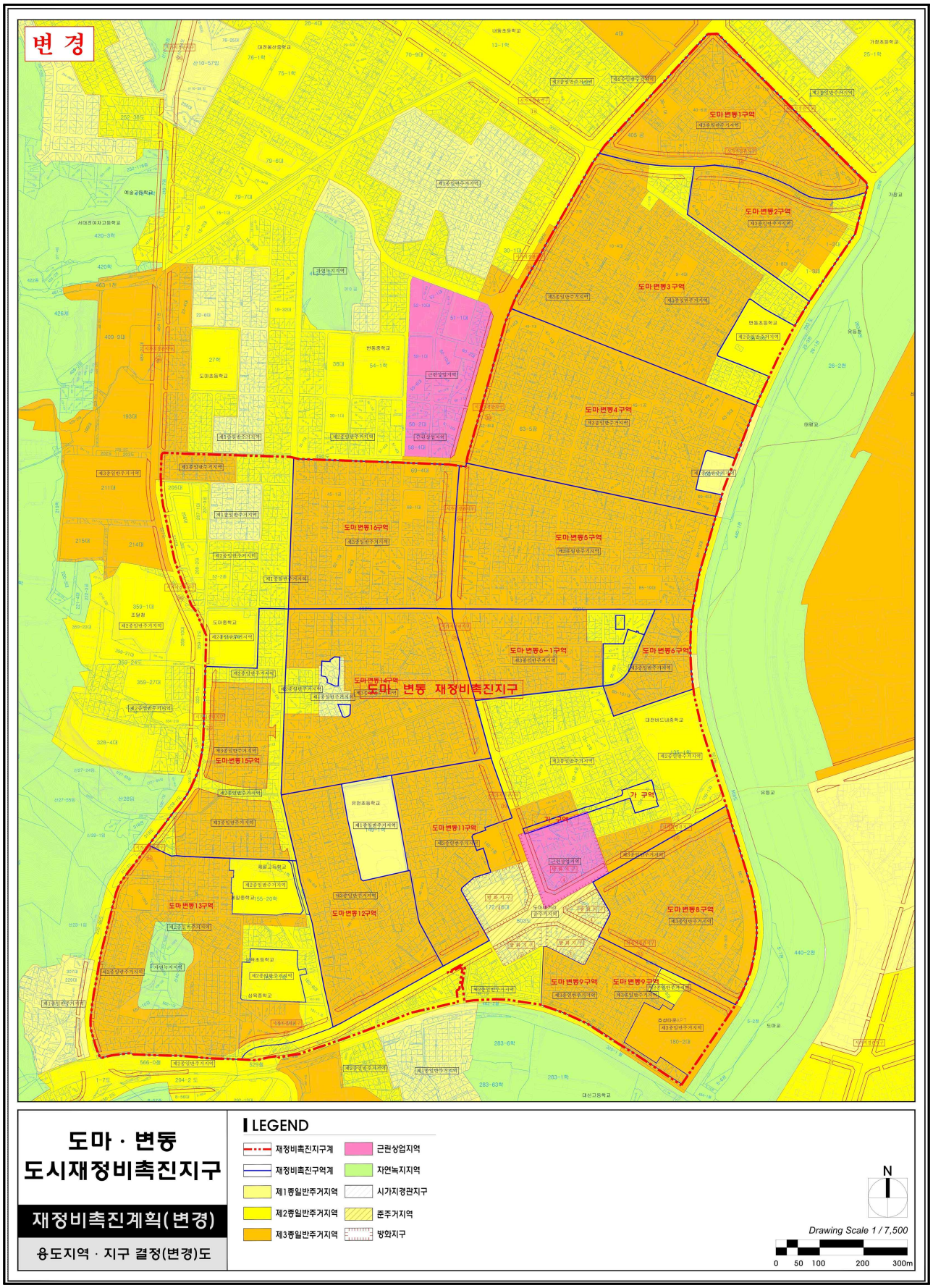
○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④	방화지구 (도마2지구)	도마동	71,280	대고90호 (2003.6.27)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3)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안)

가) 주요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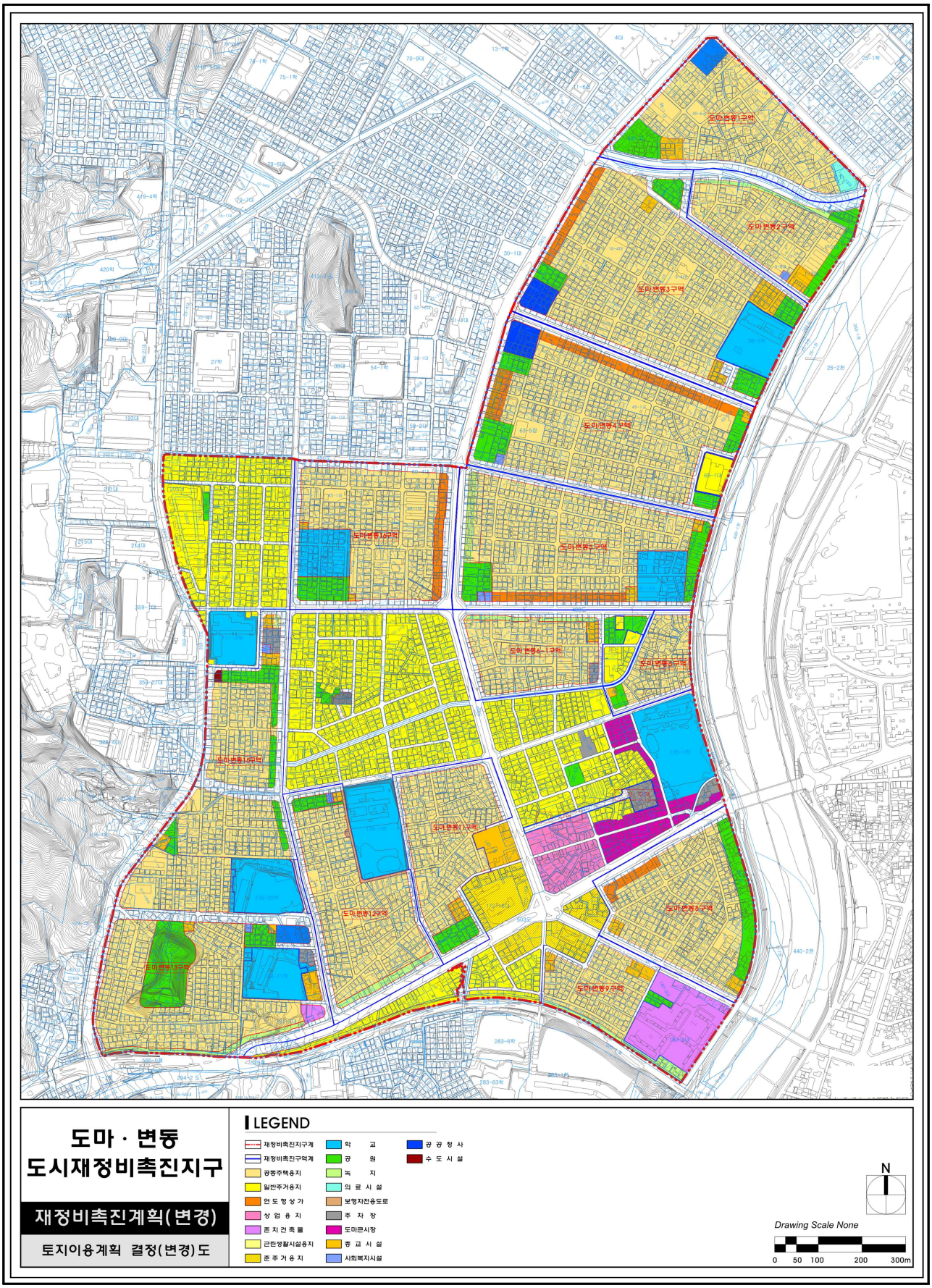
○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마·변동14구역 재지정에 따라 주거용지(공동주택, 종교용지), 공공시설용지(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공공공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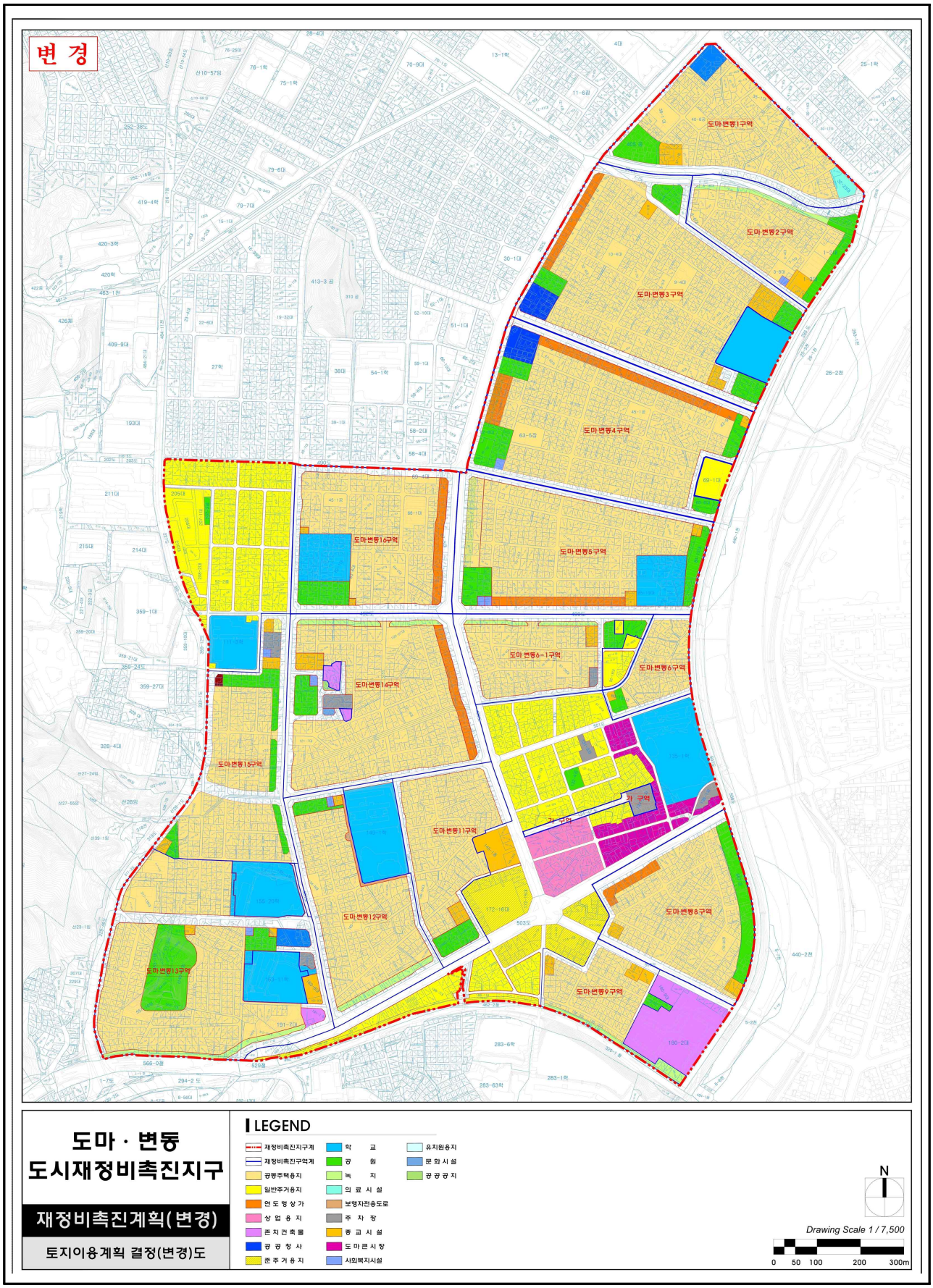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218,714.0	100.0	2,218,714.0	100.0	-
주거용지	**1,396,649.2**	**62.9**	**1,387,584.2**	**62.5**	감) 9,065.0
공동주택용지	1,076,608.00	48.5	**1,191,433.7**	**53.7**	증) 114,825.7
종교용지	33,836.40	1.5	**36,301.1**	**1.6**	증) 2,464.7
유치원용지	837.6	0.0	837.6	0.0	-
일반주거용지	284,824.2	12.8	**158,468.8**	**7.1**	감) 126,355.4
근린생활시설용지	543.0	0.0	543.0	0.0	-
상업용지	81,227.1	3.7	81,227.1	3.7	-
근린상업용지	20,940.0	0.9	20,940.0	0.9	-
준주거용지	34,255.0	1.5	34,255.0	1.5	-
도마큰시장	21,757.0	1.0	21,757.0	1.0	-
의료시설용지	2,489.7	0.1	2,489.7	0.1	-
주유소용지	1,785.4	0.1	1,785.4	0.1	-
공공시설용지	**740,478.8**	**33.4**	**749,543.8**	**33.8**	증) 9,065.0
공원	117,963.90	5.3	**121,119.8**	**5.5**	증) 3,155.9
녹지	20,115.10	0.9	**23,752.2**	**1.1**	증) 3,637.1
학교	145,062.5	6.5	145,062.5	6.5	-
공공청사	16,616.9	0.7	16,616.9	0.7	-
주차장	11,941.0	0.5	**12,953.0**	**0.6**	증) 1,012.0
일반도로	425,611.30	19.2	**425,661.1**	**19.2**	증) 49.8
공공공지	0.0	0.0	**353.6**	**0.0**	증) 353.6
문화시설	0.0	0.0	**414.6**	**0.0**	증) 414.6
보행자전용도로	93.0	0.0	93.0	0.0	-
청소년수련시설	350.0	0.0	350.0	0.0	-
사회복지시설	2,250.10	0.1	**2,692.1**	**0.1**	증) 442.0
수도시설	475.0	0.0	475.0	0.0	-
철도용지(존치)	358.9	0.0	358.9	0.0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도마 · 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LEGEND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공동주택용지
일반주거용지
연 도 형 상 가
상 업 용 지
존 치 건 축 물
근린생활시설용지
준 주 거 용 지
학 교
공 원
녹 지
의 료 시 설
보행자전용도로
주 차 장
도마큰시장
종 교 시 설
사회복지시설
공 공 청 사
수 도 시 설
N
Drawing Scale None
0 50 100 200 300m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변 경
도마변동1구역
도마변동2구역
도마변동3구역
도마변동4구역
도마변동5구역
도마변동6구역
도마변동6-1구역
도마변동7구역
도마변동8구역
도마변동9구역
도마변동10구역
도마변동11구역
도마변동12구역
도마변동13구역
도마변동14구역
도마변동15구역
도마변동16구역
가 구역
도마 · 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LEGEND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공동주택용지
일반주거용지
연 도 형 상 가
상 업 용 지
존 치 건 축 물
공 공 청 사
존 주 거 용 지
학 교
공 원
녹 지
의 료 시 설
보행자전용도로
주 차 장
종 교 시 설
도 마 큰 시 장
사회복지시설
유지원용지
문 화 시 설
공 공 공 지
N
Drawing Scale 1 / 7,500
0 50 100 200 300m

4)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변경(안)

○ 기정 30,818세대 / 75,320인 → 변경 32,217세대 / 78,074인

구 분		주택(호)수 / 임대			인구수(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0,776 1,608	증)1,399 / 증)199	32,175 / 1,807	75,217	증) 2,754	77,971
재정비 촉진 구역	소계	25,578 1,608	증)2,678 / 증)199	28,256 / 1,807	62,574	증) 5,893	68,467
	도마 · 변동1	1,779 / 119	- / -	1,779 / 119	4,501	-	4,501
	도마 · 변동2	1,074 / 94	- / -	1,074 / 94	2,621	-	2,621
	도마 · 변동3	3,404 / 237	- / -	3,404 / 237	8,306	-	8,306
	도마 · 변동4	3,045 / 212	- / -	3,045 / 212	7,431	-	7,431
	도마 · 변동5	2,622 / 165	- / -	2,622 / 165	6,398	-	6,398
	도마 · 변동6	528 / 41	- / -	528 / 41	1,289	-	1,289
	도마 · 변동6-1	1,110 / 71	- / -	1,110 / 71	2,709	-	2,709
	도마 · 변동8	1,881 / 95	- / -	1,881 / 95	4,759	-	4,759
	도마 · 변동9	818 / 52	- / -	818 / 52	2,067	-	2,067
	도마 · 변동11	1,558 / 95	- / -	1,558 / 95	3,943	-	3,943
	도마 · 변동12	1,593 / 117	- / -	1,593 / 117	3,887	-	3,887
	도마 · 변동13	2,603 / 168	- / -	2,603 / 168	6,352	-	6,352
	도마 · 변동14	- / -	증)2,678 / 증)199	2,678 / 199	-	증) 5,893	5,893
	도마 · 변동15	1,601 / 30	/	1,601 / 30	3,523	-	3,523
	도마 · 변동16	1,962 / 112	- / -	1,962 / 112	4,788	-	4,788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5,198 / -	감)1,279 / -	3,919 / -	12,643	감) 3,139	9,504
	기 존치구역	1,565 / -	- / -	1,565 / -	4,234	-	4,234
	존치관리D	616 / -	- / -	616 / -	1,208	-	1,208
	존치관리E	607 / -	- / -	607 / -	1,245	-	1,245
	존치관리F	157 / -	- / -	157 / -	393	-	393
	존치관리I	1,279 / -	감)1,279 / -	- / -	3,139	감) 3,139	-
	존치관리L	974 / -	- / -	974 / -	2,424	-	2,424

주1) 2030 대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2020년의 가구당인구 지표 반영(2.53인/가구)
주2) 2030 대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2025년의 가구당인구 지표 반영(2.44인/가구) [도마·변동2, 3, 4, 5, 6, 6-1, 12, 13, 16구역]
주3)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2030년의 가구당인구 지표 반영(2.2인/가구) [도마·변동14, 15구역]
주4) 존치관리구역은 현황 세대수 및 인구수 적용
주5) 기 존치구역은 건축물대장상 세대수를 적용하고 증가한 세대수에 2020년 가구당인구 지표를 반영하여 인구수 적용

5)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가) 교통시설

○ 도로(변경)

- 촉진구역(도마·변동14구역) 재지정에 따른 도로 변경

구분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비고
기정	74	1	11	15	47	
변경	감) 9	-	-	증) 2	감) 11	
변경 후	65	1	11	17	36	

○ 주차장(변경)

- 촉진구역(14구역) 내 주차장 추가 확보[11,941.0㎡→12,953.0㎡ 증) 1,012.0㎡]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시설수(개소)	7	-	7	
면적(㎡)	11,941.0	증) 1,012.0	12,953.0	

나) 공간시설

○ 공원(변경)

- 촉진구역(14구역) 내 소공원1개소 폐지,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시설수(개소)	계	28	-	28	
	근린공원	1		1	
	어린이공원	13	증) 1	14	
	소공원	11	감) 1	10	
	체육공원	1	-	1	
	문화공원	2	-	2	
면적(㎡)	계	117,963.9	증) 3,155.9	121,119.8	
	근린공원	18,384.2	-	18,384.2	
	어린이공원	48,922.1	증) 4,474.8	53,396.9	
	소공원	26,649.0	감) 1,318.9	25,330.1	
	체육공원	11,522.6	-	11,522.6	
	문화공원	12,486.0	-	12,486.0	

○ 녹지(변경)

- 촉진구역(14구역) 북측 연결녹지 신설(B=12m, A= 3,637.1㎡)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5	증) 1	6	
면적(㎡)	20,115.1	증) 3,637.1	23,752.2	

○ 공공공지(변경)

- 촉진구역(14구역)내 공공공지 신설(A= 353.6㎡)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	증) 1	1	
면적(㎡)	-	증) 353.6	353.6	

다) 공공·문화시설 등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4	-	4	
면적(㎡)	16,616.9	-	16,616.9	

○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8	-	8	
면적(㎡)	145,062.5	-	145,062.5	

○ 사회복지시설**(변경)**

- 촉진구역(14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신설(A= 2,692.1㎡)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6	증) 1	7	
면적(㎡)	2,250.1	증) 442.0	2,692.1	

○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1	-	1	
면적(㎡)	350.0	-	350.0	

○ 수도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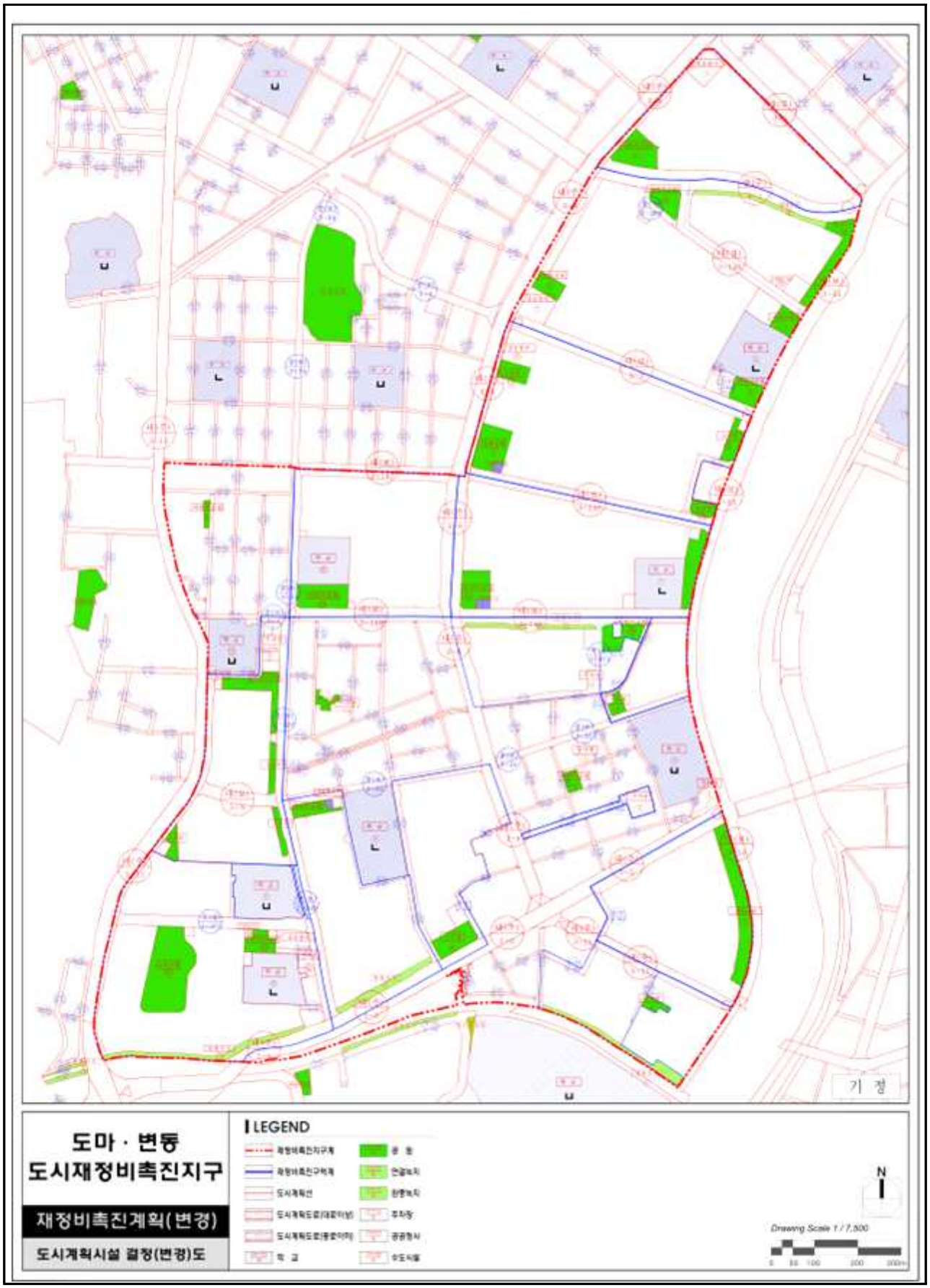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1	-	1	
면적(㎡)	475.0	-	475.0	

○ 문화시설**(변경)**

- 촉진구역(14구역) 내 문화시설(도서관) 신설(A=414.6㎡)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시설수(개소)	-	1	1	
면적(㎡)	-	증) 414.6	414.6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라)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 기반시설설치 및 비용분담계획(변경)

구역명	구 분	기반시설명	규모(㎡)	부담주체	부담방식	관리자
합 계	기 정	-	459,445.5	-	-	-
	변 경	-	503,296.1	-	-	-
도마·변동 1구역	기 정	소 계	28,529.9	-	-	-
		도 로	18,551.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787.0	서구청 (공공부담)	설치비지원	서구청
			5,409.0	사업시행자	비용분담	
		공공청사	3,782.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조성제공)	
도마·변동 2구역	기 정	소 계	23,814.4	-	-	-
		도 로	14,051.8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광역시 /서구청
		공 원	6,615.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녹 지	3,247.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사회복지시설	350.1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3구역	기 정	소 계	46,649.5	-	-	-
		도 로	29,151.9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12,847.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공공청사	4,650.2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4구역	기 정	소 계	45,266.0	-	-	-
		도 로	25,809.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13,83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공공청사	5,127.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제공)	
		사회복지시설	50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5구역	기 정	소 계	50,191.2	-	-	-
		도 로	26,187.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10,303.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사회복지시설	35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청소년수련시설	35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학 교	13,000.3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조성제공)	대전교육청
도마·변동 6구역	기 정	소 계	7,149.0	-	-	-
		도 로	5,700.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1,448.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도마·변동 6-1구역	기 정	소 계	24,822.8	-	-	-
		도 로	17,130.8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4,066.7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녹 지	2,762.9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주 차 장	862.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8구역	기 정	소 계	27,481.7	-	-	-
		도 로	15,959.1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6,383.6	서구청 (공공부담)	설치비지원	서구청
			4,779.0	사업시행자	비용분담	
			36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구역명	구 분	기반시설명	규모(㎡)	부담주체	부담방식	관리자
도마·변동 9구역	기 정	소 계	12,034.4	-	-	-
		도 로	2,423.2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3,567.2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녹 지	4,651.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공 원	1,392.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11구역	기 정	소 계	22,754.0	-	-	-
		구역내 도 로	14,625.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구역내 공 원	4,778.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구역외	3,350.0	사업시행자	현금납부	대전시
도마·변동 12구역	기 정	소 계	28,196.4	-	-	-
		도 로	21,388.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2,656.4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녹 지	3,802.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사회복지시설	35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도마·변동 13구역	기 정	소 계	59,894.1	-	-	-
		도 로	26,332.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21,476.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녹 지	5,651.3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공공청사	3,057.2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조성제공)	
		사회복지시설	35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학교	1,897.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교육청
		주차장	1,13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도마·변동 14구역	신설	소 계	43,850.6	-	-	-
		도 로	32,369.9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4,474.8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녹 지	3,637.1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주차장	2,158.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공공공지	353.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사회복지시설	442.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문화시설	414.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도마·변동 15구역	기 정	소 계	36,944.3	-		
		도 로	23,198.3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주차장	2,00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조성제공)	서구청
		공 원	10,921.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수도시설	475.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350.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도마·변동 16구역	기 정	소 계	45,717.8	-	-	-
		도 로	26,226.2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 원	6,491.1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서구청
		학 교	13,000.5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부지조성제공)	대전교육청

※ 주1) 초등학교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학군내 구역에서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충당

주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름

주3) 도마·변동14구역의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은 증축을 우선 검토하고, 증축이 어려울 경우 신축하여 기부채납

○ 기반시설 순부담률(변경)

구 분		계		도마변동1	도마변동2	도마변동3	도마변동4	도마변동5	도마변동6
		기정	변경						
③촉진구역(㎡)면적		1,535,243.6	**1,696,384.6**	105,527.5	69,667.6	192,992.0	182,001.0	157,548.3	28,958.4
기반시설면적(㎡)	①계획기반시설(㎡)	450,992.0	**494,842.6**	27,742.9	23,814.4	46,649.5	45,266.0	50,191.2	7,149.0
	②종래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05,974.23	**344,986.43**	23,876.2	18,684.6	36,230.8	32,044.6	30,910.2	5,823.8
④순부담면적(㎡) (①-②)		145,017.77	**149,856.17**	3,866.7	5,129.8	10,418.7	13,221.4	19,281.0	1,325.2
순부담 비율(%) (④/③)		9.4%	**8.8%**	3.7%	7.4%	5.4%	7.3%	12.2%	4.6%

구 분		도마변동 6-1	도마변동 8	도마변동 9	도마변동 11	도마변동 12	도마변동 13	도마변동 14(신설)	도마변동 15	도마변동 16
③촉진구역(㎡)면적		68,055.9	102,743.0	44,013.8	76,129.0	99,920.5	178,570.6	**161,141.0**	103,886.1	125,229.9
기반시설면적(㎡)	①계획기반시설(㎡)	24,822.8	21,098.1	12,034.4	22,754.0	28,196.4	58,611.2	**43,850.6**	36,944.3	45,717.8
	②종래기반시설내 국·공유지(㎡)	16,173.6	18,583.0	8,230.2	17,733.1	24,886.2	27,254.1	**39,012.2**	19,879.63	25,664.2
④순부담면적(㎡) (①-②)		8,649.2	2,515.1	3,804.2	5,020.9	3,310.2	31,357.1	**4,838.4**	17,064.67	20,053.6
순부담 비율(%) (④/③)		12.7%	2.4%	8.6%	6.6%	3.3%	17.5%	**3.0%**	16.4	16.0%

6)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세대수				비고
		소계	분양	임대	임대비율(%)	
도마·변동1구역		1,779	1,660	119	6.7	재개발
도마·변동2구역		1,074	980	94	8.8	재개발
도마·변동3구역		3,404	3,167	237	7.0	재개발
도마·변동4구역		3,045	2,833	212	7.0	재개발
도마·변동5구역		2,622	2,457	165	6.3	재개발
도마·변동6구역		528	487	41	7.8	재개발
도마·변동6-1구역		1,110	1,039	71	6.4	재개발
도마·변동8구역		1,881	1,786	95	5.1	재개발
도마·변동9구역		818	766	52	6.4	재개발
도마·변동11구역		1,558	1,463	95	6.1	재개발
도마·변동12구역		1,593	1,476	117	7.3	재개발
도마·변동13구역		2,603	2,435	168	6.5	재개발
도마·변동14구역(신설)		**2,678**	**2,479**	**199**	**7.4**	**재개발**
도마·변동15구역		1,601	1,571	30	1.9	도시개발
도마·변동16구역		1,962	1,850	112	5.7	재개발
합계	**기정**	**25,578**	**23,970**	**1,608**	**6.3**	-
	변경	**28,256**	**26,449**	**1,807**	**6.4**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산정 관련 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97 ('22.03.29)호, 도시개발과- 2259 (' 22.03.31), 국토정비과-2105('22.5.26)호)

-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비율(증가되는 용적률의 10%)」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비율(세대수의 5%)」을 합한 세대수 이상 확보

다. 촉진구역별 촉진계획 변경(안)

1) 도마·변동1,2,3,4,5,6,6-1,8,9,11,12,13,16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신설)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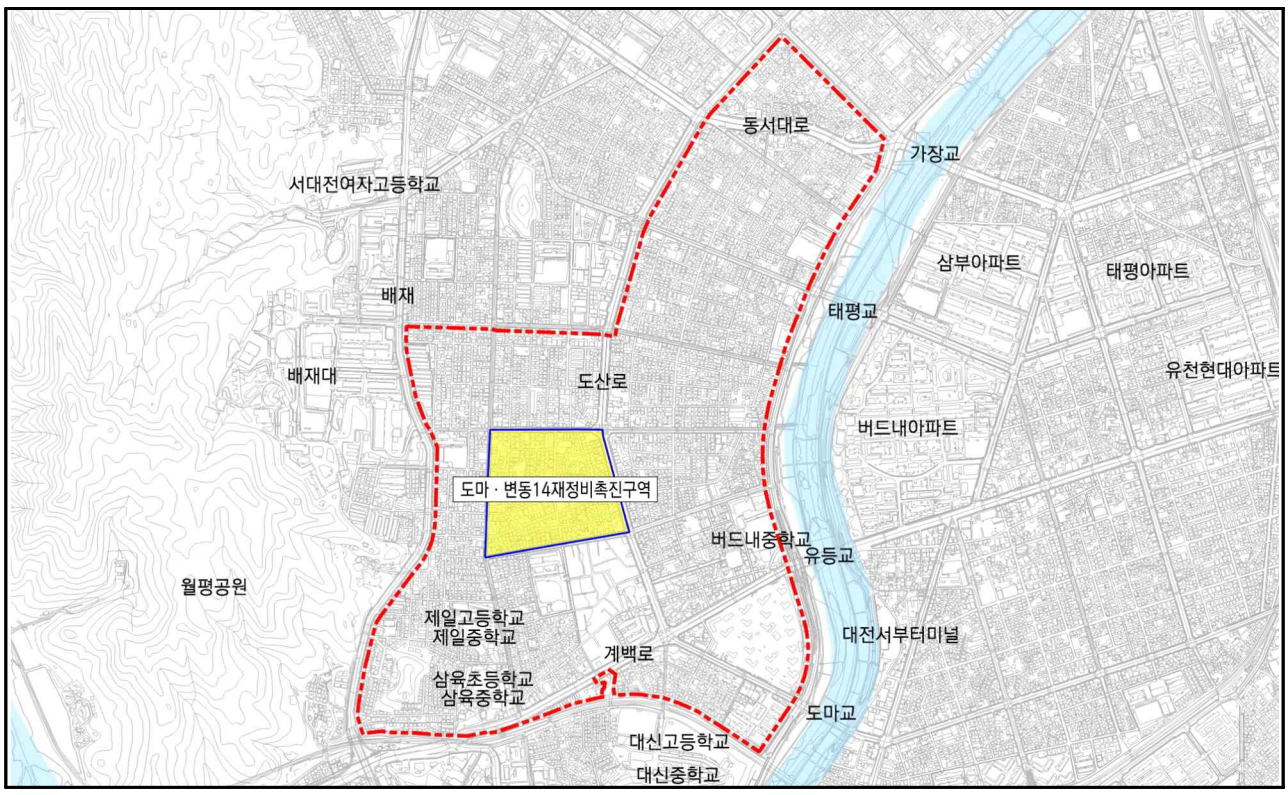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	대전시 서구 도마동 102-27 번지 일대	-	증) 161,141.0	161,141.0	-

○ 지정사유

- 주민제안에 따라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존치관리구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또는 계획된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및 어울림센터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161,141㎡)으로 재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위치도



▮ 현황사진





① 북측 조달청길(대로3-148호선, 폭원 15m)



② 동측 도산로길(대로2-8호선, 폭원 28m)



③ 남측 제비네1길(중로2-31호선, 폭원 15m)



④ 서측 도솔로길(중로1-320호선, 폭원 13m)



⑤ 사마1길(소로4-3,4호선, 폭원 8m)



⑥ 사마4길(소로2-10호선, 폭원 8m)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지정요건 중 2개 항목(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구 분		기준	구역현황	해당여부
필수조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거축물 수의 2분의 1이상	82.6% (노후 불량 414동 / 전체 동수 501동)	해당
1개 이상 충족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분의 3이상	66.2% (노후 불량 건축물 연면적 80,696.13㎡/ 전체 건축물 연면적 121,873.13㎡)	해당
	4m미만 도로율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30이상	16.9% (4m 미만 590m / 총 도로 연장 3,487m)	해당없음
	주택접도율	100분의 40이하	88.8% (도로에 접한 건축물 동수 445동/ 전체동수 501동)	해당없음
	과소필지 등	전체 필지의 100분의 40이상	10.1% (과소필지 61개 / 전체 필지 605개)	해당없음
	호수밀도	50호/ha	34.9호/ha (562호/16.141ha)	해당없음
	순환용 주택	필요지역	-	해당없음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된 지역		-	해당없음
	상습침수 지역, 재해위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해당없음
	대상구역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해당없음

○ 도시·주거정비지수

-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시·정비지수 평가결과 70.87점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기준점수 70점이상)

구 분		평가항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주민제안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3/5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필수충족	해당 (62.55%/ 52.42%)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해당 (161,141.0㎡)
	노후도	동수의 1/2이상(50%이상)			해당 (82.6%)
자치구 검토	**합계**				**70.87점**
	주민동의	토지소유자 3/5~4/5	20~40점	70점이상 충족	22.55점 (62.55%)
		토지면적 1/2~4/5	20~40점		21.77점 (52.65%)
	노후도	동수 2/3~4/5	15~20점		20.00점 (82.6%)
		연면적 3/5~4/5	5~10점		6.55점 (66.2%)
	도로연장률	4m미만 도로연장률 20%~50%이상	10~15점		0점 (16.9%)
	호수밀도	호수밀도 50~80호/ha이상	10~15점		0점 (34.9호/ha)
	신축건축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10%~20%이상	-5~-10점		0점 (9.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 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구역명	위 치	면적(㎡)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 /층수	사업시행 방식	추진 단계	토지 유형
기정	가장	도마·변동1	가장동 38-1	105,527.5	210.0%	258.0% 이하	20.0% 이하	111.9m /38층이하	재개발사업	1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가장	도마·변동2	변동 3-4	69,667.6	210.0%	270.3% 이하	25.0% 이하	105.0m /35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변동	도마·변동3	변동 9-4	192,992.0	194.4%	250.4% 이하	20.0% 이하	112.0m /38층이하	재개발사업	2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변동	도마·변동4	변동 63-5	182,001.0	185.5%	238.0% 이하	20.0% 이하	112.0m /38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5	도마동 85-19	157,548.3	197.1%	270.0% 이하	20.0% 이하	112.0m /37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6	도마동 86-66	28,958.4	197.9%	257.5% 이하	20.0% 이하	90.0m /29층이하	재개발사업	2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 6-1	도마동 96-26	68,055.9	210.0%	292.0% 이하	25.0% 이하	107.0m /35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8	도마동 179-30	102,743.0	206.1%	244.0% 이하	20.0% 이하	100.3m /34층이하	재개발사업	1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9	도마동 181-1	44,013.8	212.5%	276.3% 이하	25.0% 이하	102.0m /34층이하	재개발사업	2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11	도마동 145-8	76,129.0	211.2%	279.3% 이하	25.0% 이하	105.0m /35층이하	재개발사업	1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12	도마동 165-1	99,920.5	190.9%	236.3% 이하	25.0% 이하	111.9m /35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13	도마동 317-139	178,570.6	184.2%	264.6% 이하	25.0% 이하	93.5m /33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특별관리 필요구역
신설	**도마**	**도마·변동14**	**도마동 102-27**	**161,141.0**	**201.9%**	**249.1%**	**20.0%**	**110.0m /35층**	**재개발사업**	**3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
기정	도마	도마·변동15	도마동 119-4	103,886.1	198.9	276.9% 이하	25.0% 이하	102.7m / 34층이하	도시개발사업	-	-
기정	도마	도마·변동16	도마동 68-1	125,229.9	193.4%	276.0% 이하	25%.0 이하	118.2m / 38층이하	재개발사업	3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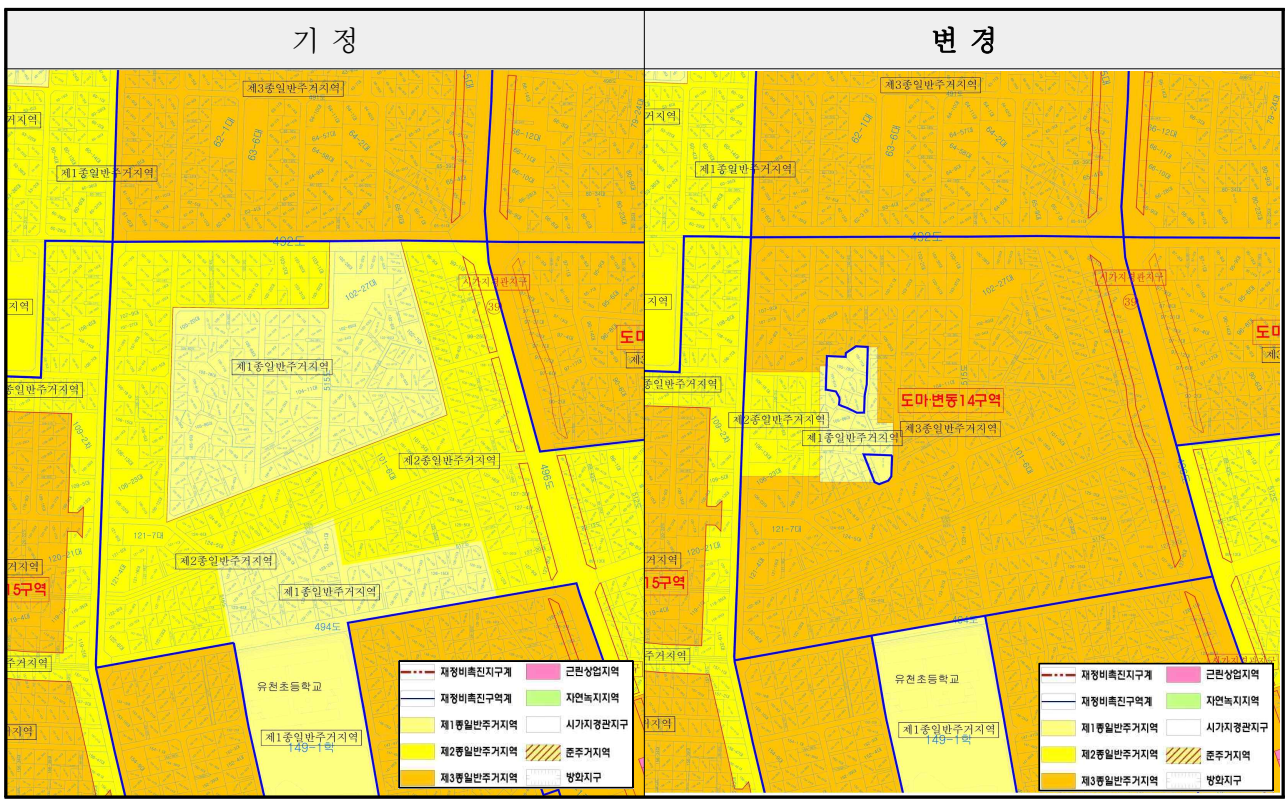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61,141.0	-	161,141.0	100.0	
주거지역	소계	161,141.0	-	161,141.0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895.0	감) 59,171.6	5,723.4	3.6	
	제2종 일반주거지역	96,246.0	감) 88,185.6	8,060.4	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147,357.2	147,357.2	91.4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㊴	경관지구 (용문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2-8호선	69,148 (22,505)	4,273 (2,343)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변경	**㊴**	**경관지구 (용문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2-8호선**	**69,216 (22,573)**	**4,281 (2,351)**	**양측8m**	**대고73호 (1992.6.19)**	

※ ( ) 지구내 면적 및 연장을 의미함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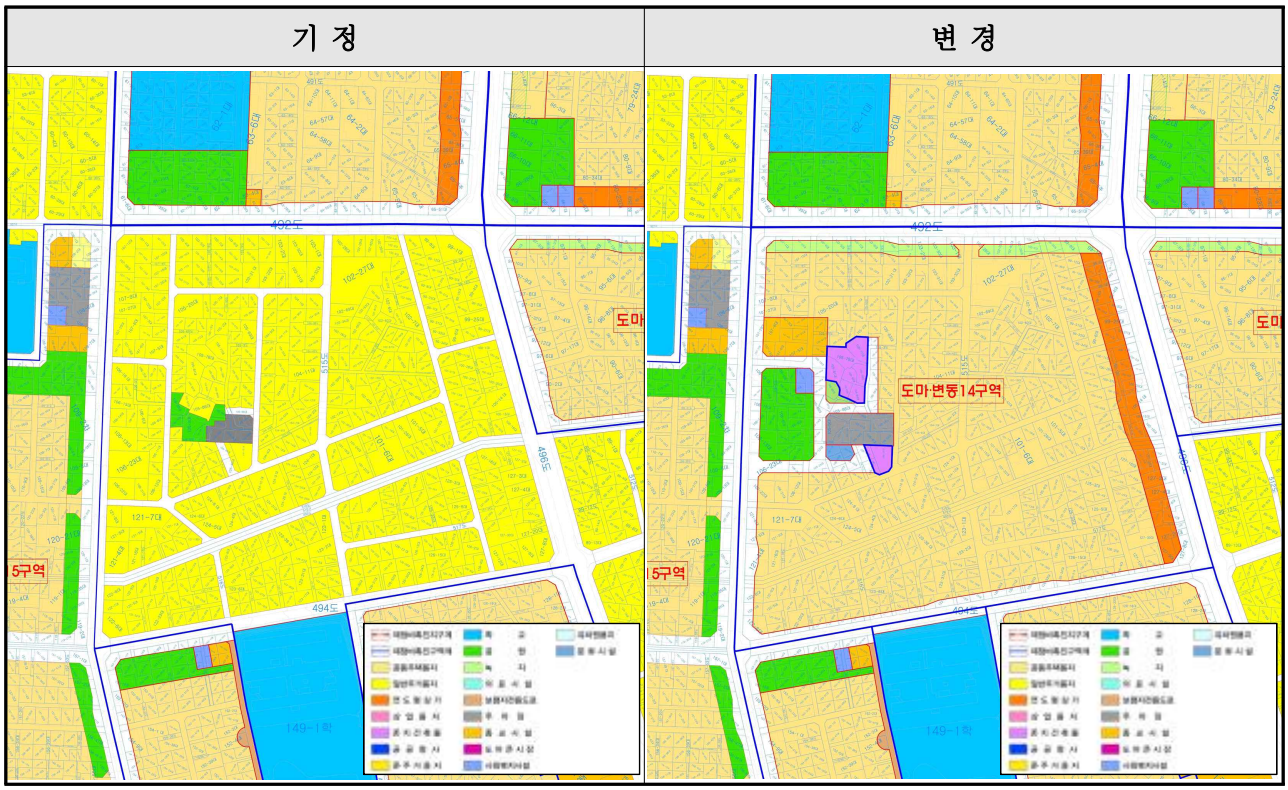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마·변동14구역 재지정에 따라 주거용지(공동주택, 종교용지), 공공시설용지(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공공공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구 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	증) 161,141.0	161,141.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42,994.0	42,994.0	26.6	
	도 로	-	증) 32,369.9	32,369.9	20.1	
	공 원	-	증) 4,474.8	4,474.8	2.7	어린이공원
	녹 지	-	증) 3,637.1	3,637.1	2.3	연결녹지
	공공공지	-	증) 353.6	353.6	0.2	
	주차장	-	증) 2,158.6	2,158.6	1.3	
택 지 (획지)	소 계	-	증) 118,147.0	118,147.0	73.4	
	14-1	-	증) 114,825.7	114,825.7	71.3	공동주택
	14-2	-	증) 2,464.7	2,464.7	1.5	종교용지
	14-3	-	증) 442.0	442.0	0.3	사회복지
	14-4	-	증) 414.6	414.6	0.3	문화시설

▌토지이용계획(변경)도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대로 2개 변경, 중로 2개 변경 및 2개 신설, 소로 12개소 폐지 및 1개 신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8	30~51.5	주간선도로	4,320 (2,190)	삼천교	도마4가	일반도로	-	건고1903호 (65.10.13)	선형변경
변경	대로	2	8	30~51.5	주간선도로	4,320 (2,190)	삼천교	도마4가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48	28.35~37	보조간선도로	867	대로 3-53	중로 2-34	일반도로	-	건고1903호 (65.10.13)	선형변경
변경	대로	3	148	28.35~37	보조간선도로	867	대로 3-53	중로 2-3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320	20~29	보조간선도로	957	대로 1-5	대로 3-148	일반도로		건고1903호 (65.10.16)	선형 및 폭원 변경
변경	중로	1	320	20~35.5	보조간선도로	957	대로 1-5	대로 3-14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1	15~23.5	보조간선도로	925	대로 3-53	중로 1-320	일반도로	-	대고2015-202호 (15.12.11.)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31	15~23.5	보조간선도로	925	대로 3-53	중로 1-320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131**	**대로 3-34**	**도마 105-94**	**일반도로**	**-**	**-**	**신설**
신설	**중로**	**3**	**B**	**12**	**국지도로**	**156**	**도마 105-12**	**도마 106-18**	**일반도로**	**-**	**-**	**신설**
기정	소로	2	10	8~22	국지도로	795	도마 170-21	도마 102-28	일반도로	-	대고2009-201호 (09.8.7)	연장변경
변경	소로	2	10	8~22	국지도로	424	도마 170-21	중로 2-3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도마 18	8	국지도로	35	소로3-36	도마4 (주차장)	일반도로	-	서고2020-158호 (20.11.30)	-
폐지	소로	3	24	6	국지도로	62	도마 100-1	도마 99-34	일반도로	-	대고209호 (98.12.29)	-
폐지	소로	3	25	6	국지도로	349	도마 102-1	도마 126-4	일반도로	-	대고77호 (96.6.25)	-
폐지	소로	3	26	6	국지도로	409	도마 103-4	도마 123-14	일반도로	-	대고56호 (97.4.3)	-
폐지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3	도마 105-1	도마 105-39	일반도로	-	대고77호 (96.6.25)	-
폐지	소로	3	28	6	국지도로	148	도마 105-20	도마 104-34	일반도로	-	대고56호 (97.4.3)	-
폐지	소로	3	29	6	국지도로	54	도마 106-19	도마 106-27	일반도로	-	대고56호 (97.4.3)	-
폐지	소로	3	36	6	국지도로	342	도마 121-6	도마 101-1	일반도로	-	대고77호 (96.6.25)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37	6	국지도로	135	도마 126-11	도마 126-1	일반도로	-	대고77호 (96.6.25)	-
폐지	소로	3	도마 98	6	국지도로	28	소로3-27	소공원A	일반도로	-	서고2020-158호 (20.11.30)	-
폐지	소로	4	3	4	국지도로	431	도마 100-16	도마 121-4	일반도로	-	건공120호 (70.11.5)	-
폐지	소로	4	4	4	국지도로	431	도마 127-1	도마 122-8	일반도로	-	건공120호 (70.11.5)	-
신설	**소로**	**1**	**A**	**10~13.5**	**국지도로**	**118**	**도마 105-87**	**도마 105-64**	**일반도로**	**-**	**-**	**신설**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기 설치된 노외주차장 확장(A=1,146.6㎡→2,158.6㎡ 증) 1,012.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주차장	노외주차장	도마동105-8번지 일대	도마동105-94번지 일대	1,146.6	증) 1,012.0	2,158.6	서고2020-158호 (20.11.30.)	-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녹지축의 연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달청길 변에 연결녹지 계획 (B=12m, A=3,637.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녹지	연결녹지	도마동 102-2일대	-	증) 3,637.1	3,637.1	-	

○ 공원 결정(변경)조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 조성된 소공원 폐지 후 어린이공원 신설로 공원면적 추가 확보 (A=1,318.9㎡ → 4,474.8㎡ 증) 3,155.9㎡)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	소공원	도마동 105-9일대	1,318.9	감) 1,318.9	-	서고2020-158호 (20.11.30.)	
신설	Ⓐ	-	어린이공원	도마동 106-6일대	-	증) 4,474.8	4,474.8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기 설치된 노인정 이전 설치 부지 계획(A=442.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	도마동 106-27 일대	-	증) 442.0	442.0	-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A=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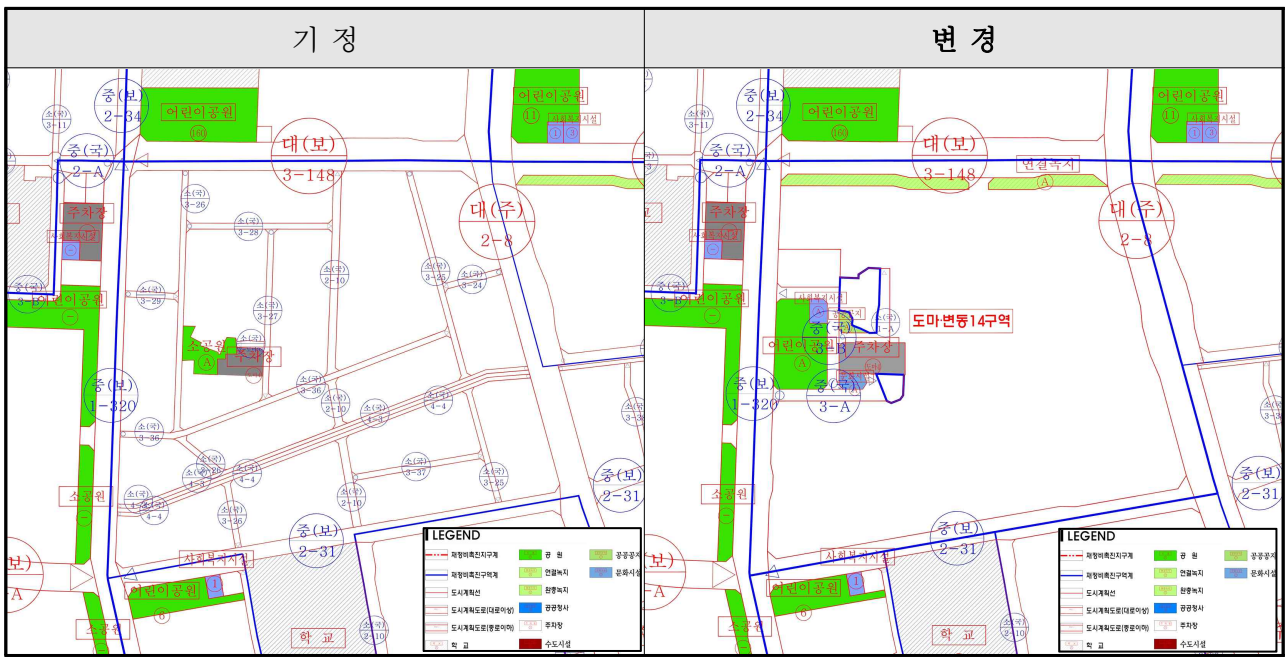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	도마동 105-82 일대	-	증) 353.6	353.6	-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기 설치된 작은도서관 이전 설치 부지 계획(A=414.6㎡)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문화시설	-	도마동 105-1 일대	-	증) 414.6	414.6	-	

■ 도시계획시설(변경)도



마)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인 구	3,139	5,893	증) 2,754
세 대 수	1,279	2,678	증) 1,399
임 대	-	199	증) 199

바) 주택건설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계	-	-	2,678	100.0	증) 2,678
60㎡ 이하	-	-	673	25.1	증) 673
60㎡~84㎡	-	-	1,558	58.2	증) 1,558
84㎡ 초과	-	-	447	15.7	증) 447

사)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도마·변동14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161,141.0	14-1	114,825.7	도마동 102-27번지 일대	공동주택	20이하	249.1이하	110.0m이하 35층
			14-2	2,464.7	도마동 107-4번지 일대	종교시설	50.0이하	250.0이하	관련법규에 의함
			14-3	442.0	도마동 106-27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60.0이하	200.0이하	관련법규에 의함
			14-4	414.6	도마동 105-11번지 일대	문화시설	60.0이하	150.0이하	관련법규에 의함

아) 용적률에 관한 계획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용적률 반영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비고
계	161,14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4,895.0	17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6,246.0	210.0	

- 기준용적률 산정

$$\text{201.89\% (기준용적률)} = \frac{\text{(1종주거 64,895.0㎡X170\%) + (2종주거 96,246.0X210\%)}}{\text{총면적 161,141.0㎡}} + \text{8.0\% (시공업체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산정

기준 용적률 (a)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용적률(%)	
	기반시설(㎡)			완화용적률(%)			
	계획 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순부담 기반시설	완화 받을수 있는 용적률	가중치 적용(b)	계획적 인센티브 (c)	허용용적률 (a+b+c)
201.89%	43,850.6	39,012.2	4,838.4	12.49	12.27	35.0%	249.16%

※ 계획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문화시설(도서관)

※ 계획적 인센티브 : 35% (건축계획 변경,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업체(시공업체) 참여 15%(기준용적률 8% 상향은 기준용적률 산정 시 적용함), (녹색건축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5%), 소셜믹스(7%), 임대주택 건립(5%), 세입자 손실보상 (3%)

-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5β) = 201.89% × (1+(1.5×0.04125146) = 214.38%

$$\beta = \frac{\text{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text{제공후 대지면적}} = \frac{\text{43,850.6 - 39,012.2}}{\text{117,290.4}} = \frac{\text{4,838.4}}{\text{117,290.4}} = 0.04125146$$

- 용적률 가중치(b)

= 가중치 적용한 완화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 × 용적률 가중치

= 12.49245496% × 0.982888035 = 12.278685%

$$= \frac{\text{(계획기반시설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의 합}}{\text{계획기반시설면적}} \div \text{기준용적률}$$

$$= \frac{\text{(12,676.8㎡×170\% + 31,173.8㎡×210\%)}}{\text{43,850.6㎡}} \div \text{201.89113\%} = \text{12.278685\%}$$

- 계획적 인센티브 반영(c)

구 분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금회 촉진계획 적용		비고
계	-		35% (기준용적률8% 상향 적용)		○ 지역 시공업체 참여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8%는 기준용적률 산정시 적용
지역업체 참여	15~20%		15% (기준용적률 8% 상향 적용)		○ 지역 시공업체 20% 참여
녹색건축인증제	2~5%	항목별 합계 최대 5%	3%	5%	-
에너지효율등급	5%		5%		-
조경식재	4%		-		-
재활용 자재 사용	5%		-		-
social-mix	3~7%		7%		-
임대주택 건립	1~5%		5%		-
세입자 손실보상	1~6%		3%		-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기부채납	증가용적률의 70%		-		-

-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201.89)% + 완화용적률(12.27%) + 추가 인센티브(35.0%)
= 249.16%(249.1% 적용)

자) 기반시설 분담계획

○ 분담원칙 :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원칙

○ 분담방법 :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가 분담

구역명	구 분	기반시설명	규모(㎡)	부담주체	부담방식	관리자
도마·변동 14구역	신설	소계	43,850.6	-		
		도로	32,369.9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대전시/서구청
		공원	4,474.8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녹지	3,637.1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주차장	2,158.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사회복지시설	442.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공공공지	353.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문화시설 (도서관)	414.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설치제공)	서구청

※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은 증축을 우선 검토하고, 증축이 어려울 경우 신축하여 기부채납

차) 사업시행자(조합) 부담대상 기반시설 계획

구역명	구분	구역 면적 (㎡)	기존 기반 시설 면적 (㎡)	계획기반시설 면적(㎡)								순부담 면적 (㎡)	비고
				계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 복지 시설	공공 공지	문화 시설		
도마·변동 14구역	신설	161,141.0	39,012.2	43,850.6	32,369.9	4,474.8	3,637.1	2,158.6	442.0	353.6	414.6	4,838.4	-

※ 순부담면적 = 계획기반시설 면적 - 기존기반시설 면적 = 43,850.6㎡ - 39,012.2㎡ = 4,838.4㎡

카)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지형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및 녹지속의 주거지경관 창출 •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미관 창출 • 연도형상가 및 건축선을 통한 가로변 개방감 제고 및 휴먼스케일의 활기찬 생활가로 형성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환경보전	• 이식가능 수목은 개발시 재식재 활용토록하며 자연적 녹지공간이 생성되도록 조경계획 • 공사장내 살수, 세륜, 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 규제 및 방진망 설치 • 재활용, 분리수거 및 성상에 맞는 처리 • 소음원 및 진동저감 대책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해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를 계획	
재난방지	•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체계 구축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 • 바닥포장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단지내 노상주차 최대한 억제,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기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도마변동 14재정비 촉진구역	161,141.0	-	-	도마동 102-27번지 일대	501	-	-	501	-	-

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비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단계별사업시행기간 내	증) 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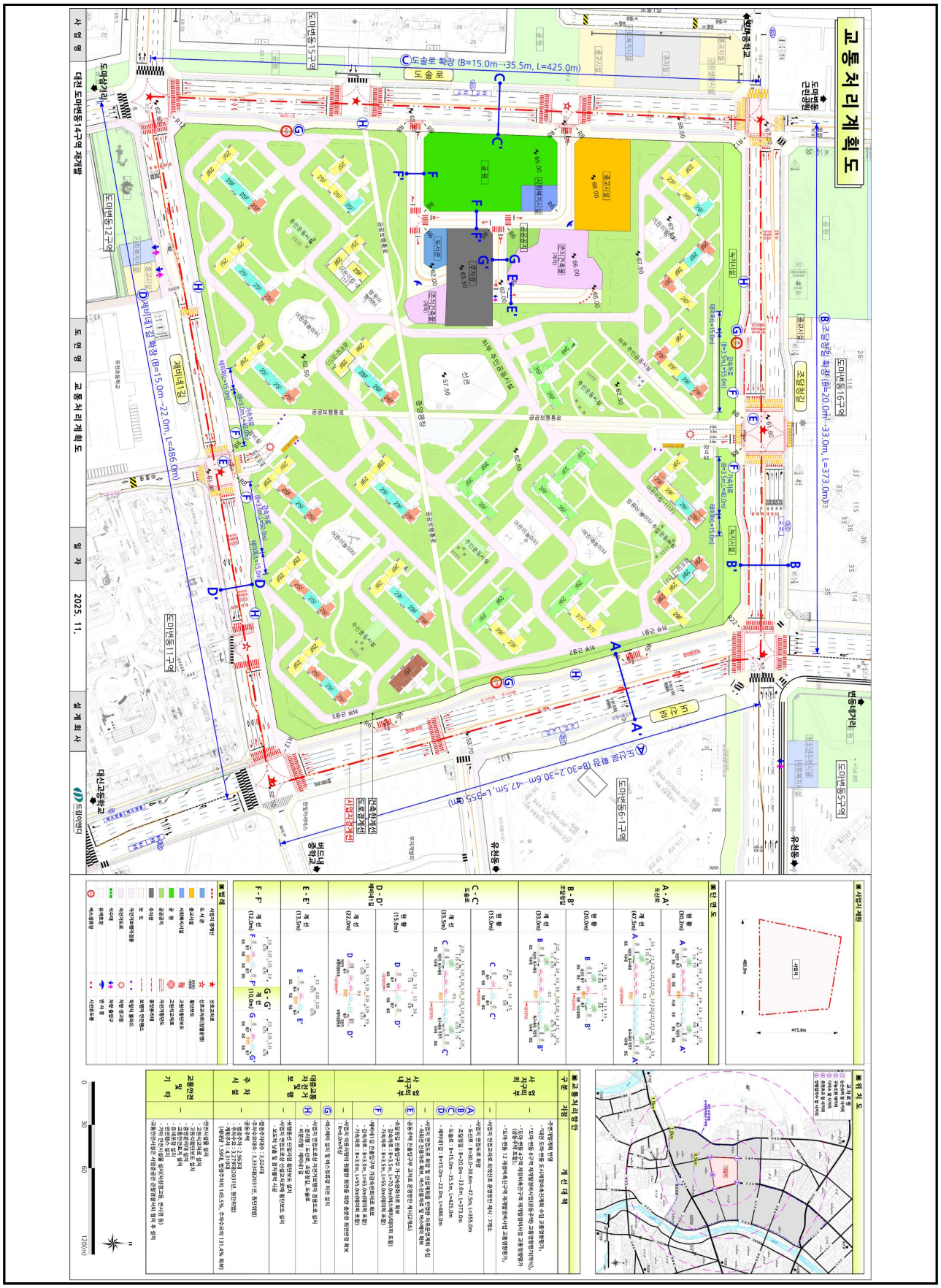
하) 건축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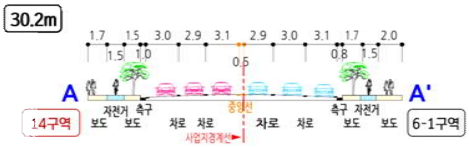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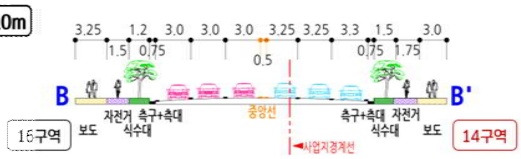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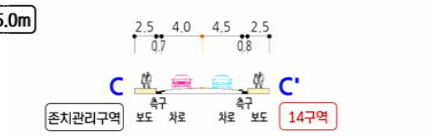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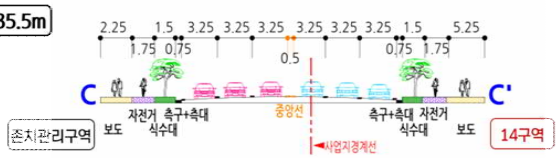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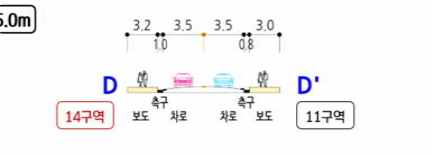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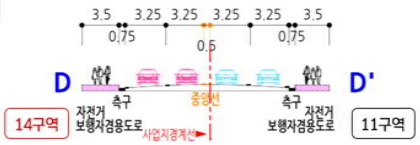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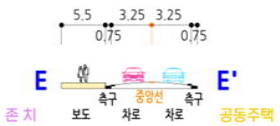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대지면적		114,825.7㎡					
건축면적		19,478.9㎡					
건폐율		16.96%(촉진계획 20%이하)					
용적률		249.03%(촉진계획 249.1%이하)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 35층, 22개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연면적	지상연면적	285,951.46㎡					
	지하연면적	169,668.43㎡					
	합계	455,619.89㎡					
주차대수(대)		4,310대[공동주택 4,265대(1.6대/세대), 근린생활시설 45대]					
세대수 (세대)	구 분	계	39	59	74	84	111
	합 계	2,678	150	523	550	1,008	447
	분 양	2,483	-	474	550	1,008	447
	임 대	199	150	49	-	-	-

▌건축배치도



▌교통처리계획도


교통처리계획도
사업명
대전 도마변동14구역 재개발
도면명
교통처리계획도
일자
2025. 11.
설계회사
대산교통
도마변동 12구역
도마변동 11구역
도마변동 10구역
도마변동 9구역
도마변동 8구역
도마변동 7구역
도마변동 6구역
도마변동 5구역
계백네거리
보문네거리
유천동
조달청
도솔로 확장 (B=15.0m→35.5m, L=425.0m)
조달청로 확장 (B=20.0m→33.0m, L=373.0m)
계백네길 확장 (B=15.0m→22.0m, L=486.0m)
A-A' 도산로
B-B' 조달청로
C-C' 도솔로
D-D' 계백네길
E-E' 계산
F-F'
G-G'
사업구역 현황
교통처리계획 개선 대책
교통안전 및 기타
주차계획
대중교통 및 보행계획
사업구역 및 주변 교통현황
범례 및 단면도
위치도

구 분	현황	계획(안)
도산로	30.2m 	47.5m 
조달청길	20.0m 	33.0m 
도솔로	15.0m 	35.5m 
제비네1길	15.0m 	22.0m 
사업지 내		13.5m 
사업지 내		12.0m 
사업지 내		10.0m 

5. 관계기관(부서)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 협의기간 : 2025년 07월 17일(목) ~ 2025년 08월 18일(월)

○ 관계기관(부서) : 36개 부서(대전시 20, 서구 16) / 3개 기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청)

○ 협의결과 : 총 의견 155건(반영 25건, 추후반영 130건)

○ 협의결과 총괄

구 분			총계	반영	추후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고
합 계		36개 부서 / 3개 기관	152	24	128	-	-	-
부서	대전광역시 (20개부서)	자연재난과	-	-	-	-	-	-
		에너지정책과	-	-	-	-	-	-
		문화유산과	1	-	1	-	-	-
		노인복지과	-	-	-	-	-	-
		환경정책과	1	-	1	-	-	-
		수질개선과	9	-	9	-	-	-
		자원순환과	-	-	-	-	-	-
		산림녹지정책과	-	-	-	-	-	-
		공원수목원과	9	2	7	-	-	-
		교통정책과	7	5	2	-	-	-
		아동보육과	5	-	5	-	-	-
		철도정책과	-	-	-	-	-	-
		건설도로과	10	2	8	-	-	-
		도시정비과	3	1	2	-	-	-
		도시경관과	-	-	-	-	-	-
		주택정책과	-	-	-	-	-	-
		회계재산과	-	-	-	-	-	-
		상수도사업본부	4	-	4	-	-	-
		토지정보과	-	-	-	-	-	-
		건설관리본부	1	-	1	-	-	-
	서구 (16개부서)	재난안전과	-	-	-	-	-	-
		기획예산과	-	-	-	-	-	-
		기후환경과	24	-	24	-	-	-
		공원녹지과	-	-	-	-	-	-
		공동주택과	-	-	-	-	-	-
		건설과	36	2	34	-	-	-
		교통과	1	-	1	-	-	-
		주차행정과	5	1	4	-	-	-
		토지정보과	6	-	6	-	-	-
		노인장애인과	1	-	1	-	-	-
		문화체육과	1	-	1	-	-	-
		공공건축과	4	-	4	-	-	-
		도서관운영과	-	-	-	-	-	-
		도시계획과	4	2	2	-	-	-
		도시정비과	9	8	1	-	-	-
		아동복지과	3	-	3	-	-	-
기관	대전경찰청(교통과)		2	2	-	-	-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	-	-	-	-
	대전광역시 교육청(행정과)		9	-	9	-	-	-

○ 대전광역시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자연재난과	• 의견 없음	-	-
에너지정책과	• 의견 없음	-	-
문화유산과	• 당해 사업 규모(163,818㎡)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향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사업 규모(163,818㎡)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향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노인복지과	• 의견 없음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별표3), 제58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임. ※사업면적 : 163,818㎡ - 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은 처분 후 20일 이내에 사업의 인·허가 통보(→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치 제11호 서식)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사업목적 그 추진 근거법령,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따라 대상사업 종류, 적용지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기관에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수질개선과	[하수관로 기본계획분야]		
	• 오수량 산정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23.12.)'에 따라 산정하며 기본계획 외 추가 하수량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 명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신규 개발사업 지구 내 하수처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분류식 계획 수립 - 사업구역 일원은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분류식화가 추진 중으로 사업관로 연결로 분류식화 추진	• 구역 내 하수처리계획은 분리식으로 계획하겠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향후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오수량에 의한 하류부 기존 관로(차집관로 포함)의 처리 용량(여유율) 검토 및 결과 제시 - 사업구역 일원은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분류식화가 추진 중으로 사업관로 연결 가능 여부 검토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금회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오수량에 의한 하류부 기존 관로(차집관로 포함)의 처리 용량(여유율) 검토 및 결과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수질개선과	• 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는 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에 따라 강우지속시간 1시간 94mm, 2시간 131mm, 3시간 153mm로 계획 수립하고 향후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관련 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 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94호(2023.1.3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는 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에 따라 강우지속시간 1시간 94mm, 2시간 131mm, 3시간 153mm로 계획 수립하고 향후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관련 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 계획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우수 유역면적 산출 및 수리 계산을 통해 충분한 여유율을 확보하여 침수가 예방되도록 관로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 - 향후 재개발사업으로 우수 발생 증가시 하류부 기존 관로에 대한 처리 용량 검토 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우수 유역면적 산출 및 수리 계산을 통해 충분한 여유율을 확보하여 침수가 예방되도록 관로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지형이 낮은 저지대를 형성하거나 호우 시, 내수침수가 발생(우려)하였을(될) 경우 사업지구 내 도시침수를 예방하도록 별도 시설 확충 검토 및 결과 제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지형이 낮은 저지대를 형성하거나 호우 시, 내수 침수가 발생(우려)하였을(될) 경우 사업지구 내 도시침수를 예방하도록 별도 시설 확충 검토 및 결과 제시겠음	추후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하수도(우·오수)에 대한 설치계획(구역 내 기존시설 철거·대체 등 포함) 작성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하수도(우·오수)에 대한 설치계획(구역 내 기존시설 철거·대체 등 포함) 작성하겠음	추후 반영
	[하수관로 상세계획분야]		
	• 향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계시 상기 기본계획 분야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시설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하수도 관리청(관할 구청 건설과)과 별도 협의 - 하수도 시설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3.12.)’,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내진설계 반영)	• 향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계시 상기 기본계획 분야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시설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하수도 관리청(관할 구청 건설과)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기타사항]		
	• 오염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오염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자원순환과	• 의견 없음	-	-
산림녹지정책과	• 의견 없음	-	-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공원수목원과	• 폐지되는 도솔마을 소공원 면적 대비 많은 공원 면적 확보 반영	• 폐지되는 도솔마을 소공원 면적(A=1,323.4㎡) 대비 많은 (A=4,474.8㎡의) 공원 면적(A=4,474.8㎡)을 확보하였음	반영
	• 인근 어린이 및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시설이 배치 가능하도록 공원 유형은 어린이공원으로 반영	• 추후, 공원내 도입시설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반영	•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공원조성계획결정 절차 별도 이행, 단, 당해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협의 완료하고 결정내용을 해당 사업 정비계획(또는 시행계획 등) 고시(문)에 반드시 게재	• 공원조성계획결정에 대한 절차는 향후, 관계부서(대전시 공원수목원과, 서구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결정내용을 고시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등에 따라 계획중인 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원시설 및 개발밀도 준수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등에 따라 도입 가능한 공원시설 및 개발밀도를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도입하여 CCTV, 조명시설, 안내판 등 설치하여 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대책 강구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시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도입하여 CCTV, 조명시설, 안내판 등 설치하여 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 토지이용(시설계획)과 확실히 구별하도록 조성	•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 토지이용(시설계획)과 확실히 구별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성 계획 반영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성 계획 반영	추후 반영
	• 사업 완료 후 공원녹지법 제19조에 의한 공원관리청은 대전광역시장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조성된 공원은 관리청인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을 무상양여 또는 귀속 ※ 상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후 재협의	• 무상양여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은 추후, 귀 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해당 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승인관청으로 심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해당 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승인관청으로 심의요청 하겠음	추후 반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제5조(관련자료 제출)에 따라 10일 이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임대, 공제사항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제5조(관련자료 제출)에 따라 10일 이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임대, 공제사항 포함)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교통처리방안관련]		
교통정책과	• 도솔로 (C단면) 한 개 차로 추가 확보	• 사업지 서측 도솔로의 경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도마변동 15구역 계획안을 반영하여 당초 제시한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붙임1]
	• 도산로는 사업지 북측 사업지에 맞춰 도로 추가 확폭하고 사업지측 끝차로는 사업지 진출입구 완화차로로 활용	• 도산로는 본 사업지 북측 사업지에 맞춰 1개 차로 추가 확보하여 왕복 8차로→왕복 9차로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지 끝차로는 사업지 진출입구 완화차로로 활용토록 하겠음	반영 [붙임2]
	• 제비네1길 상 남측 진출입구 완화차로는 최대한 길이 연장	• 제비네1길 상 남측 진출입구의 완화차로 중 사업지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연장을 당초 45m→60m(테이프 포함)를 확보하였음	반영 [붙임3]
	• 횡단면도 상 개별 폭원의 합이 총 폭원과 상이하므로 수정 제시	• 횡단면도 상 개별 폭원의 합이 총 폭원과 맞도록 수정하였음	반영
	• 횡단면도 상 사업지 경계선은 현황 단면에도 추가 제시하고 주변개발계획 폭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	• 횡단면도 상 사업지 경계선은 현황 단면도에 추가하였으며, 주변개발계획 폭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음	반영
아동보육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 절차 이행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table>
<tr><th>협의 부서</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3">아동보육과</td><td>•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기본시설 포함된 어린이집 관련도서(내부마감재료, 설비도면 포함) 작성하여 자치구 보육부서와 협의 필요
⇒ (기본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보육정원 21명 이상),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준수(중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 (참고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td><td>•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기본시설 포함된 어린이집 관련도서(내부마감재료, 설비도면 포함)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 정원기준 이상 영유아가 활동할 것을 예상하여 계획
<table>
<tr><th>세 대 수</th><th>어린이집 최소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정원기준</th></tr>
<tr><td>300~600세대 미만</td><td>세대당 0.1인의 인원</td></tr>
<tr><td>600~1,000세대 미만</td><td>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td></tr>
<tr><td>1,000세대 이상</td><td>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td></tr>
<tr><td>2,000세대 이상</td><td>[50+(세대수-500)×0.02명] 이상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td></tr>
</table>
- 어린이집 전용면적(영유아 1명당 4.29㎡ 이상)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 설치(영유아 1명당 3.5㎡ 이상)
- 보육실 구획 시 아래표 참고(영유아 1명당 2.64㎡ 이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table>
<tr><th>구 분</th><th>0세</th><th>1세</th><th>2세</th><th>3세</th><th>4세 이상</th></tr>
<tr><td>원 칙</td><td>3명</td><td>5명</td><td>7명</td><td>15명</td><td>20명</td></tr>
<tr><td>보육실 면적(㎡)</td><td>7.92</td><td>13.2</td><td>18.48</td><td>39.6</td><td>52.8</td></tr>
</table>
* 향후 어린이집 전용면적, 보육실면적, 옥외놀이터 면적을 산정한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td><td>• 건축인허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 정원기준 이상 영유아가 활동할 것을 예상하여 어린이집을 계획 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보육실은 고정칸막이벽보다 가벽 설치 등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각 실별 기둥이 있을 경우 영유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한 안전장치 설치</td><td>• 보육실은 고정칸막이벽보다 가벽 설치 등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각 실별 기둥이 있을 경우 영유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철도정책과</td><td>• 의견 없음</td><td>-</td><td></td></tr>
</tabl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철도정책과	• 의견 없음	-	-
건설도로과	• 본사업구역의 고밀도 개발(2,690세대) 및 주변 개발계획(도마·변동 16구역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 수립	• 추후 교통영향평가 절차 시행 시 교통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 사업시행 후에도 사업시행 전 서비스수준과 동일한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교통개선대책 수립(일부 구간 사업시행 후 서비스수준 저하)	• 추후 교통영향평가 절차 시행 시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 대지 내 공동주택 건설 후 주변 기반시설(도로 등)을 후 순위 공종에 시공하면서 지적불부합, 현황과 지적 불일치 등으로 도로(보도포함) 폭원 미확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결과(예정지 좌표 측량 결과 등) 제출 후 착공 / 교평 등 개선대책으로 시공예정인 도로 폭원에 대해 확보 가능한지를 측량 결과를 통해 사전확인	• 추후 교통영향평가 절차 시행 시 현황측량 등을 시행하여 실제 확보가능한 도로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 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도로) 무상귀속(양도)은 사업시행인가 전 별도 협의	• 국·공유지(도로) 무상귀속(양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반영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확장 및 set-back, 보도 등)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추후 도로관리청에 무상귀속절차 이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확장 및 set-back, 보도 등)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추후 도로관리청에 무상귀속절차 이행하겠음	추후반영
	• 사업지구 내·외 도로의 확장 및 신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계획	• 사업지구 내·외 도로의 확장 및 신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계획하겠음	추후반영
	• 대지경계선, 사업구역선 각각 구분하여 도면(평면,횡단)에 별도 표기	• 대지경계선, 사업구역선 각각 구분하여 도면(평면,횡단)에 별도 표기하겠음	반영
	• 종교시설, 공공시설 진출입구 확정 후 세부계획 수립하여 재협의	• 종교시설, 공공시설 진출입구 확정 후 재협의토록 하겠음	추후반영
	• 20m미만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서구 건설과)별도 협의	• 20m미만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서구 건설과)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상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후 재협의	• 상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후 재협의 토록하겠음	추후반영
도시정비과	• 사업 위치가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추진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청사의 위치 변경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관계기관(부서) 협의 필요	• 사업구역내 포함된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구역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인 서구청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반영
	• 도시재생사업으로 기투입된 보조금 등 예산상 문제점에 대한 관련법 검토 필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기투입된 보조금 등 예산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관계부서인 서구청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진행하겠음	추후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정비과	• 2015년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된 위치임을 감안, 해당 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철저 수행	• 향후, 주민공람,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경관과	• 의견없음	-	
주택정책과	• 의견없음	-	
회계재산과	• 의견없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과)	[원인자 부담금 관련]		
	• 사업시행자는「수도법」제71조 및「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용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한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산정금액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귀 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상수도 공급 관련]		
	•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및 인근 급수구역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수도시설 설치 등의 조치	•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및 인근 급수구역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수도시설 설치 등의 조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상수관로, 밸브, 블록유량계 설치 등 세부사항은 우리본부와 별도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상수관로, 밸브, 블록유량계 설치 등 세부사항은 귀 본부와 별도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본부와 협의 후 결정. < 상수도 기반시설 사공 시 준수사항 > ○ 관로탐사 및 누수탐사가 용이하며, 사공 후 누수수선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관로 사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공·유지관리를 위해 수도자재 및 상수도 사공은 대전광역시 관내 업체 선정 ○ 배수관 매설심도(토피)는 H=1.2m를 유지 및 타 시설물과 50㎝이상 이격 ○ 사업시행 시 사업구역 및 구역 외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설해야 하며, 기존관로 철거(폐쇄) 및 임시관로(가급수) 등의 부설 조치는 사업시행자 시행 ○ 사업구역 내 기존 수용가 계량기 폐전에 따른 본관(급수관)폐쇄, 공사용수비 납부는 서부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시행자 시행 / 철거 시행 전 본관폐쇄 계획 등을 첨부하여 우리본부와 협의 ○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관세척 등 부대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우리본부와 협의 후 조치 ○ 사업완료 후 상수도 시설물은 준공 전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는 우리본부 입회하에 실시하고 상수도시설물 조서 및 공사관련 설계도서 하자이행증권 등 관련 서류 제출	•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귀 본부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상수도사업본부(급수과)	○ 상수도시설물GIS 측량(실시간)성과품 및 성과심사 결과는 사업준공 전 우리본부로 제출 ○ 배수관 및 급수관 매설구간 관표표시테이프(30㎝상단), 관로표지핀 및 분기표지핀 설치 ○ 상수도 철개는 개·폐가 용이한 안전철개 사용 / 실시설계 또는 착공 전 협의 ○ 급수관 분기시 부식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체도장된 이탈방지 새들분수전을 사용하고 소프트실 지수밸브 및 지수전 설치(D=32mm 이상 급수관) ○ 모든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적합하고 내식 처리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소프트 밸브 설치시 공기가 자동으로 배출되고 관로 및 밸브의 내구연한이 증가되도록 공기밸브가 부착된 부식방지 소프트실 제수밸브 사용 ○ 관세척에 따른 배출수는 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추후반영
토지정보과	• 의견 없음	-	
건설관리본부(시설정비과)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위해 향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반영

○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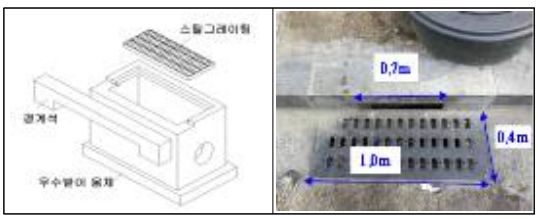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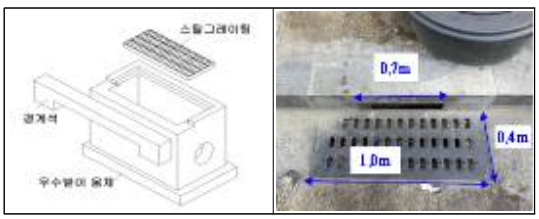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재난안전과	• 의견 없음	-	-
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
기후환경과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관련 법 검토 및 협의기관은 환경부 및 시청 소관 사항임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련법에 적합하게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대기환경보전법]		
	• 건물에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등 사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설 설치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건물에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등 사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설 설치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겠음	추후 반영
	• 건축물축조공사 1,000㎡ 이상, 토공사 1,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연면적 3,000㎡ 이상, 조경공사 5,000㎡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 건축물축조공사 1,000㎡ 이상, 토공사 1,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연면적 3,000㎡ 이상, 조경공사 5,000㎡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공사 시 세륜, 공사장 수시 살수, 공사 장비 분산투입, 시속 20km이하로 운행 및 그 밖의 억제시설 운용 등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해야함	• 공사 시 세륜, 공사장 수시 살수, 공사 장비 분산투입, 시속 20km이하로 운행 및 그 밖의 억제시설 운용 등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대기관리권역법]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이 마련되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건축법, 주택법 등) 시 건물 신축·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나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권고함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협의토록하겠음	추후 반영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토목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공사시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토목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추후 반영
	• 공사 과정 중 시멘트, 페인트 등 수질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 등이 인근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공사 과정 중 시멘트, 페인트 등 수질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 등이 인근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추후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 공사과정 중 토양오염 사실 발견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토양오염 사실을 신고하고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과정 중 토양오염 사실 발견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토양오염 사실을 신고하고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기후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규정에 의하여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여함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규정에 의하여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겠음	추후 반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 추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제출 전 사전협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의 설치기준(공사장 방음시설 설치)을 준수하겠음 * 추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제출 전 사전협의	추후 반영
	• 공사장 소음으로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1) 주변에 소음 억제시설(방음벽 등)설치, 장비 분산투입, 경적금지 등의 조치로 소음 최소화 2) 이른 아침·주말 공사작업 자제 및 큰 소음 유발 공정의 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주택 등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공사장 소음으로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1) 주변에 소음 억제시설(방음벽 등)설치, 장비 분산투입, 경적금지 등의 조치로 소음 최소화 2) 이른 아침·주말 공사작업 자제 및 큰 소음 유발 공정의 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주택 등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추후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에 따른 시설 중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건축허가(최초 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기축시설인 경우 제외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겠음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기축시설인 경우 제외	추후 반영
	•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3 ~ 241.17.5 및 부칙(제2023-839호, 2023. 11. 21)의 규정을 준수할 것.	•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3 ~ 241.17.5 및 부칙(제2023-839호, 2023. 11. 21)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환경보전법]		
	• 「환경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환경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기후환경과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 장식조명 등 인공조명 설치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70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72호)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장식조명 등 인공조명 설치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70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72호)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아울러 세부추진계획(실시설계)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선정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 추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부추진계획(실시설계)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선정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 추진하겠음	추후 반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바람.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고려 및 내부 다양한 공간 연출이 되도록 바람설치 요망 2)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고려하여 견고한 화장실 설치 요망	• 공중화장실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겠음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고려 및 내부 다양한 공간 연출이 되도록 바람설치 요망 2)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고려하여 견고한 화장실 설치 요망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기후환경과	[수도법]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 현재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정화조 설치대상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정하여 정화조 설치 신고해야 함	• 정화조 설치 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정하여 정화조 설치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에 공기 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 정화조 설치 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에 공기 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향후 市 건설관리본부(건설2과)에서 추진중인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계획 변경 시 착공 전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재협의 바람	• 착공 전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공원녹지과	• 의견 없음	-	-
공동주택과	• 의견 없음	-	-
건설과	[토목팀]		
	• 도솔로(도마삼거리 방향 보도)의 경우 서구-20호선으로 고시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최소폭(3.0m) 확보 필요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2.12.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m, 측방여유(양측) 각 0.25m 이상	• 본 사업지 서측 도솔로에 계획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분리형)의 폭은 총 5.75m(자전거 1.75m+보도 4.0m)로 최소폭 3.0m 이상 확보하였음	반영 [붙임4]
	• 사업대상지 북측 조달청길(유천동 방향) 버스베이 구간이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와 중복되어 버스 정차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감속차로 구간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버스베이 이동 설치 등 검토	• 사업지 북측 조달청길에 설치된 감속차로는 버스 정차 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45m→55m(테이프 제외)로 추가확보하였음	반영 [붙임5]
	• 사업구역 및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전선 및 통신선 등 지중화 필요 - 지중화 계획 등 반영 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경계 인접한 지구의 사업 시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구역 및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전선 및 통신선 등 지중화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설과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단계로 향후 사업(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등) 진행 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부 협의 후 시행	• 향후 사업(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등) 진행 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 후 시행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 후 시행하겠음	추후 반영
	[하수팀]		
	• 하수도 시설은『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3.12.』,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2025.1.』,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2023.5.』,『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하수도 시설은『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3.12.』,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2025.1.』,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2023.5.』,『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신규 개발사업 지구 내 하수처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분류식 계획 수립 - 단지 내 우·오수관로 분류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되, 사업 시행 시(실제 착공 시) 市 건설관리본부(건설2과)에서 추진 중인 「서구 도마, 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협의하여 재개발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시설계획 수립 및 재협의	• 신규 개발사업 지구 내 하수처리계획은 분류식 계획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 오수량 산정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3.12.)’에 따라 산정하며 기본계획 외 추가 하수량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 명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오수량 산정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3.12.)’에 따라 산정하며 기본계획 외 추가 하수량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 명기하겠음	추후 반영
	• 금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 산출 및 이에 따른 하류부 기존 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한 처리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	• 사업시행인가 전 금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 산출 및 이에 따른 하류부 기존 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한 처리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는 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에 따라 강우지속시간 1시간 94mm, 2시간 131mm, 3시간 153mm로 계획 수립하고 향후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관련 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 계획 수립(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94호(2023.1.30.))	• 사업시행인가 전 우수량 강우강도는 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에 따라 강우지속시간 1시간 94mm, 2시간 131mm, 3시간 153mm로 계획 수립하고 향후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관련 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 계획 수립하겠음.(대전광역시 방재성능 목표 공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94호(2023.1.30.))	추후 반영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우수 유역면적 산출 및 수리 계산을 통해 충분한 여유율을 확보하여 침수가 예방되도록 관로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 - 금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우수 발생 증가시 하류부 기존 관로에 대한 처리 용량 검토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우수 유역면적 산출 및 수리 계산을 통해 충분한 여유율을 확보하여 침수가 예방되도록 관로 용량 검토 및 결과 제시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설과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지형이 낮은 저지대를 형성하거나 호우 시, 내수 침수가 발생(우려)하였을(될) 경우 사업지구 내 도시침수를 예방하도록 별도 시설 확충 검토 및 결과 제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지형이 낮은 저지대를 형성하거나 호우 시, 내수 침수가 발생(우려)하였을(될) 경우 사업지구 내 도시침수를 예방하도록 별도 시설 확충 검토 및 결과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2025.1」에 따라 하수도시설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내진설계 검토 반영 및 결과 제출 / 내진Ⅱ등급 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하수도 설계(내진 설계 등)에 대해서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기타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시 하수도 관계법령, 하수도설계기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하수도 내진설계 등 하수도 관련 규정 준수	•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시 하수도 관계법령, 하수도설계기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하수도 내진설계 등 하수도 관련 규정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 공공하수도 연결 시 관 상단 천공 금지 및 관 내부로 돌출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맨홀접속 금지), 우·오수관 천공 시 40㎝이상 이격, 접속부 단지관 설치	• 공공하수도 연결 시 관 상단 천공 금지 및 관 내부로 돌출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맨홀접속 금지), 우·오수관 천공 시 40㎝이상 이격, 접속부 단지관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기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전면철거(연결관 철거가 어려울 경우 그라우팅 등을 시행하여 기존관 파손으로 인한 도로침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 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기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철거에 대한 사항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신설 L형 측구의 경우 관련규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물고임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시공 - 횡단보도 낮춤구간에 빗물받이 설치 불가	• 신설 L형 측구의 경우 관련규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물고임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시공하겠음	추후 반영
	• 신규 설치하는 빗물받이의 경우 개량형으로 신설(예시도 참고) - 빗물받이 연결관의 경우 D250mm 이상으로 시공 - 하수 처리계획이 확정되면 빗물받이 설치 계획 수립 및 재협의 	• 신규 설치하는 빗물받이의 경우 개량형으로 신설하겠음(예시도 참고) - 빗물받이 연결관의 경우 D250mm 이상으로 시공 - 하수 처리계획이 확정되면 빗물받이 설치 계획 수립 및 재협의 	추후 반영
	• 보도 설치 시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고, 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할 것 (하수도 설계기준)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보도 설치 시 빗물받 등 하수도 설계에 대해서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분류식 지역의 우수맨홀뚜껑은 ‘빗물’, 오수맨홀뚜껑은 ‘사용한물’, 합류식 지역의 맨홀뚜껑은 ‘하수’로 표기	• 분류식 지역의 우수맨홀뚜껑은 ‘빗물’, 오수맨홀뚜껑은 ‘사용한물’, 합류식 지역의 맨홀뚜껑은 ‘하수’로 표기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설과	• 차로확장에 따라 맨홀위치가 차도로 옮겨지는 경우 차도용 맨홀뚜껑을 설치하며 우수맨홀의 경우 ‘빗물’, 오수맨홀의 경우 ‘사용한물’로 표기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잠금형 맨홀 지양 - 인도부 내 맨홀의 경우 주철 칼라맨홀 사용 (콘크리트 칼라맨홀 사용 지양)	• 차로확장에 따라 맨홀위치가 차도로 옮겨지는 경우 차도용 맨홀뚜껑을 설치하며 우수맨홀의 경우 ‘빗물’, 오수맨홀의 경우 ‘사용한물’로 표기하겠음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잠금형 맨홀 지양 - 인도부 내 맨홀의 경우 주철 칼라맨홀 사용 (콘크리트 칼라맨홀 사용 지양)	추후 반영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상습 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은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에 따라 맨홀 이탈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2-270호(2022.12.28.) 관련]	• 상습 침수구역 등에 맨홀을 설치할 경우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에 따라 맨홀 이탈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음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2-270호(2022.12.28.) 관련]	추후 반영
	• 당해 사업구간 내 존치되는 기존관의 경우 CCTV조사 등을 통한 보수·보강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당해 사업구간 내 존치되는 기존관의 경우 CCTV조사 등을 통한 보수·보강계획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 신설 우수BOX, 맨홀, 빗물받이의 경우 시공성, 경제성, 품질 등을 고려해 기성제품 사용	• 신설 우수BOX, 맨홀, 빗물받이의 경우 시공성, 경제성, 품질 등을 고려해 기성제품 사용하겠음	추후 반영
	• 신설 LU형 측구의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해 주철 측구 뚜껑을 지양하며,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스틸그레이팅뚜껑 받침 사용(기성제품, 두께 75mm)	• 신설 LU형 측구의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해 주철 측구 뚜껑을 지양하며,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스틸그레이팅뚜껑 받침 사용하겠음 (기성제품, 두께 75mm)	추후 반영
	• 시설물 인계 대상 하수도시설물은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경제성, 접합부의 침입수 및 불명수 유입 최소화 등을 위해 장대관 사용하며, 흄관 사용 배제 - 관로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및 CCTV 촬영자료, 수밀시험(또는 공기압 시험) 결과 제출	• 시설물 인계 대상 하수도시설물은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경제성, 접합부의 침입수 및 불명수 유입 최소화 등을 위해 장대관 사용하며, 흄관 사용 배제하겠음 - 관로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및 CCTV 촬영자료, 수밀시험(또는 공기압 시험) 결과 제출	추후 반영
	• 당해 사업시행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GIS를 구축하여『대전광역시 하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입력자료(shp파일) 및 하수관 제원(관종, 관경, 지반고, 관저고, 맨홀규격 등)이 표기된 전산자료(준공도, CAD파일) 제출 - 하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shp파일) 데이터쿼티 기준으로 제출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당해 사업시행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GIS를 구축하여『대전광역시 하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입력자료(shp파일) 및 하수관 제원(관종, 관경, 지반고, 관저고, 맨홀규격 등)이 표기된 전산자료(준공도, CAD파일) 제출하겠음 - 하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shp파일) 데이터쿼티 기준으로 제출	추후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를 시행하고, 특히 관로검사는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하고 검사결과(수밀시험 결과, CCTV조사 파일 등) 제출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를 시행하고, 특히 관로검사는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하고 검사결과(수밀시험 결과, CCTV조사 파일 등)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table>
<tr><th>협의 부서</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11">건설과</td><td>•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 준공 30일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수량 산정 등)
❍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을 수반할 경우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 확충 조치
- 상위 계획을 통한 기존 공공하수도 수용 가능 여부 등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협의 등</td><td>•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 준공 30일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겠음(하수량 산정 등)
❍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을 수반할 경우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 확충 조치
- 상위 계획을 통한 기존 공공하수도 수용 가능 여부 등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협의 등</td><td>추후 반영</td></tr>
<tr><td>• 배수설비 연결 공사와 관련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득할 것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 내용 누락없이 작성</td><td>• 배수설비 연결 공사와 관련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득하겠음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 내용 누락없이 작성</td><td>추후 반영</td></tr>
<tr><td>• 배수설비 준공 신청 시 공공관로 준설 및 CCTV 결과물, 수밀시험결과 등을 제출할 것</td><td>• 배수설비 준공 신청 시 공공관로 준설 및 CCTV 결과물, 수밀시험결과 등을 제출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사업지구 내 발생 우·오수관로를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유역면적 산출 및 배수 유역 설정으로 적정하게 분산하여 배출</td><td>• 사업지구 내 발생 우·오수관로를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유역면적 산출 및 배수 유역 설정으로 적정하게 분산하여 배출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사업지구 내 배수설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공동주택용지 대지 경계부에 반드시 최종 우·오수 맨홀 설치</td><td>• 사업지구 내 배수설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공동주택용지 대지 경계부에 반드시 최종 우·오수 맨홀 설치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우·오수관로의 공공하수관로 접속시 상단부 연결 및 연결관 경사도 적정 시공 조치(대지 내 하수 역류 및 침수방지 확인)</td><td>• 우·오수관로의 공공하수관로 접속시 상단부 연결 및 연결관 경사도 적정 시공 조치하겠음(대지 내 하수 역류 및 침수방지 확인)</td><td>추후 반영</td></tr>
<tr><td colspan="3">[건설행정팀]</td></tr>
<tr><t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사전협의가 요구되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td><td>•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colspan="3">[조명팀]</td></tr>
<tr><td>• 실시계획 등 수립 시 반영 요청
<table>
<tr><th>검토분야</th><th>설계내용</th><th>검토의견</th></tr>
<tr><td>조 도</td><td>◦별도내용없음</td><td>◦도로 확장으로 인한 가로등은 향후 광속 감퇴 등을 고려하여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후 종합균제도 반영</td></tr>
<tr><td>가로등주 색상</td><td>◦별도내용없음</td><td>◦색상: N4.7(대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색상 적용)</td></tr>
<tr><td>가로등주</td><td>◦별도내용없음</td><td>◦철제 원형테이퍼 가로등 적용
◦철거 가로등 ⇒ 재사용 불가 자체 처리
◦철제 원형테이퍼 가로등에 보행등 50W 설치</td></tr>
</table></td><td>• 실시계획 등 수립 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겠음
<table>
<tr><th>검토분야</th><th>설계내용</th><th>검토의견</th></tr>
<tr><td>조 도</td><td>◦별도내용없음</td><td>◦도로 확장으로 인한 가로등은 향후 광속 감퇴 등을 고려하여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후 종합균제도 반영</td></tr>
<tr><td>가로등주 색상</td><td>◦별도내용없음</td><td>◦색상: N4.7(대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색상 적용)</td></tr>
<tr><td>가로등주</td><td>◦별도내용없음</td><td>◦철제 원형테이퍼 가로등 적용
◦철거 가로등 ⇒ 재사용 불가 자체 처리
◦철제 원형테이퍼 가로등에 보행등 50W 설치</td></tr>
</table></td><td>추후 반영</td></tr>
</table>

<table>
<tr><th>협의 부서</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건설과</td><td>
<table>
<tr><th>검토분야</th><th>설계내용</th><th>검토의견</th></tr>
<tr><td>기 초</td><td>◦별도내용없음</td><td>◦기성 제품사용 / 직각기초
◦가로등주 10m 500*800*1,200
◦가로등주 9m 500*800*1,100
◦가로등주 8m 500*800*1,000</td></tr>
<tr><td>방수
접속함</td><td>◦별도내용없음</td><td>◦8Pin 1개
◦가로등주 하부내 방수접속함 (ELB내장형)설치
◦방수접속함은 상시/격등용, IP 68 이상 설치
◦2등용 이상은 ELB 2개 내장형 설치</td></tr>
<tr><td>LED 등기구</td><td>◦별도내용없음</td><td>◦가로등주 안에 SMPS 설치</td></tr>
<tr><td colspan="3">◦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14구역) 도로는 도마·변동 11구역 및 도산로와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체가 완료된 도마·변동 11구역 가로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된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공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td><td>
<table>
<tr><th>검토분야</th><th>설계내용</th><th>검토의견</th></tr>
<tr><td>기 초</td><td>◦별도내용없음</td><td>◦기성 제품사용 / 직각기초
◦가로등주 10m 500*800*1,200
◦가로등주 9m 500*800*1,100
◦가로등주 8m 500*800*1,000</td></tr>
<tr><td>방수
접속함</td><td>◦별도내용없음</td><td>◦8Pin 1개
◦가로등주 하부내 방수접속함 (ELB내장형)설치
◦방수접속함은 상시/격등용, IP 68 이상 설치
◦2등용 이상은 ELB 2개 내장형 설치</td></tr>
<tr><td>LED 등기구</td><td>◦별도내용없음</td><td>◦가로등주 안에 SMPS 설치</td></tr>
<tr><td colspan="3">◦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14구역) 도로는 도마·변동 11구역 및 도산로와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체가 완료된 도마·변동 11구역 가로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된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공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td><td></td></tr>
<tr><td>교통과</td><td>•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기도래시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td><td>•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기도래시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rowspan="3">주차행정과</td><td>•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업 추진 전에 관련부서(대전시, 서구청, 경찰서 등)와 협의하여 추진</td><td>•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업 추진 전에 관련부서(대전시, 서구청, 경찰서 등)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지침
가. 교차로, 내리막길, 곡선부 등 차량이 회전하거나 제동이 어려운 구간은 운전자의 잘못(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이나 환경적 요인(빗길,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돌진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기 해당 구간은 중대한 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디자인은 서구청과 별도 협의
나.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대상 구간을 제외한 경사가 없는 직선도로에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보행자의 무단횡단 억제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디자인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선정</td><td>•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시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가. 교차로, 내리막길, 곡선부 등 차량이 회전하거나 제동이 어려운 구간은 운전자의 잘못(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이나 환경적 요인(빗길,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돌진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기 해당 구간은 중대한 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디자인은 서구청과 별도 협의
나. 차량(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대상 구간을 제외한 경사가 없는 직선도로에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보행자의 무단횡단 억제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디자인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선정</td><td>추후 반영</td></tr>
<tr><td>• 사업 구역내 노외주차장(도마동 101-11번지) 및 노상주차장(조달청길 주변)이 있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구역 내 현재 사용중인 공영주차장 면수 이상을 수용 가능하도록 할 것.</td><td>•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를 추가확보하였음(현황 노외주차장 면적 1,921.9㎡, 계획 노외주차장 면적 2,158.6㎡ 증 236.7㎡)</td><td>반영</td></tr>
</tabl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주차행정과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여 주차장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맞게 설계하고 무인관제시스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사항을 반영한 세부 설계도서를 사업시행 전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완료 후 사업시행 추진해야 함.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주차장설치에 대한 사항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공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준공 전 6개월 전에 우리 부서와 협의(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 필요)해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절차이행(기부채납신청,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해야 함.	·「공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준공 전 6개월 전에 우리 부서와 협의(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 필요)해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절차이행(기부채납신청,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하겠음	추후 반영
토지정보과	[공유(일반)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구 소유 일반재산은 없으나, 추가 편입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 협의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구 소유 일반재산은 없으나, 추가 편입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기타 구 소유 행정재산은 해당 재산관리관(건설과)과 별도 협의	·기타 구 소유 행정재산은 해당 재산관리관(건설과)과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이 발생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하여야함 ※지적확정측량업무처리 절차 관련 [붙임] 자료 참고 및 사업시행자에 안내 요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이 발생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교체·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교체·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겠음	추후 반영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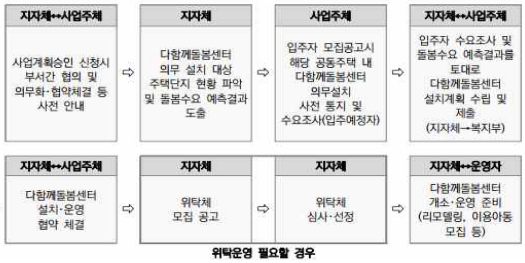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정보과	1.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 3.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 4.예상설치비용과 설치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서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주등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 3.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 4.예상설치비용과 설치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서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주등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하고,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획서 회신 요청	• 사업시행인가 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노인장애인과	• 정비계획 구역 내 위치한 산적골·매화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경로당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책이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부지 내 기존경로당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설치(기부채납/설치제공) - 재개발기간 중 임시사용 경로당 확보(인근주택 임대 등	• 사업구역 내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계획하였으며, 기존 경로당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설치 후 기부채납하고, 임시하용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 사회복지시설부지 내 기존경로당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설치(기부채납/설치제공) - 재개발기간 중 임시사용 경로당 확보(인근주택 임대 등	추후 반영
문화체육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여부 / 설치 대상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	•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	추후 반영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항 및 제4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항 및 제4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1항 및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제2항 →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1항 및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제2항 →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과	•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로서 市에 감리원 배치 신고 철저	•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 시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착공전 감리용역업자 선정 후 해당 감리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세부 기술기준 검토 추진(홈 네트워크 보안,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설비 등)	• 착공전 감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별표 준용<시행 2024.7.19.>	• 방송통신설비 설치 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구역 내 설치된 CCTV 이전 관련 해서는 사전협의 필요	• 사업구역 내 설치된 CCTV 이전 시 귀 부서와 사전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계획과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협의 이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규모 및 허용용도와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기반시설(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저촉 여부 검토 필요(공공청사용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지 가능 여부, 허용용도 외 규칙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	•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용지에 도마변동재정비촉진계획상 건축물 주 용도가 제1·2종근린생활시설인 뷰티산업진흥원, 어울림 플랫폼는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구역에서 제척하고, 존치시설로 결정하였음	반영
	• 건축한계선 지정 여부는 유동 인구에 따른 보행향과 보도 설치 여부 및 보도의 폭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 지정을 지양, 최소한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 건축한계선은 도마변동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지정한 사항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에는 무조건적인 행위 제한보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설치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검토 요청	• 금회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존치I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14)으로 재 지정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도마·변동재정비촉진계획(건축한계선, 대지내 전면공지계획 등)에 부합하는 전면공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재정비촉진계획상 대지내 전면공지 계획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보행공간 확보,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전면공지는 인접보도와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하고, 공공보도의 포장재와 바닥패턴 등을 일체화해 쾌적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함 → 전면공지에는 담장 및 계단, 주차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함 → 또한 전면공지는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의 개발 시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교차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기각부의 아파트 건축시 최소 12m이상 후퇴하여 개방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또한, 건축한계선 후퇴부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계단 및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이외의 건축한계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되는 공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본 결정도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충실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추후 반영
도시정비과	[재개발팀]		
	• 도산로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계획에 대한 적정 유무 검토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도산로는 사업지변으로 1개 차로를 추가 확보(왕복8차로→9차로)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10]
	•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기존 보행로가 단절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검토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6]
	•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식 기입	•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식을 제출하겠음	반영 [붙임7]
	•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물량, 임대주택 건립세대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 필요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증가용적률의 10%와 대전광역시 고시 2012-59호(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한 세대수의 5%를 합한 값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였음	반영 [붙임8]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정비과	•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항목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 인증제도 변경 사항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기본계획 변경이 될 경우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재생2팀]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각 시설의 존치・이설에 관한 세부 계획(위치,규모, 진입 동선 등) 제시	• 뷰티산업진흥원 및 어울림플랫폼은 존치시설로 계획하였고, 작은 도서관은 별도 용지를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9]
	• 존치시설의 이용(진입도로)상 문제가 없도록 토지이용 재검토(현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지하1층 진입 불가)	• 현 진입도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붙임10]
	•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어울림플랫폼, 직주락 허브(뷰티산업진흥원+공영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적합성 재검토 (현 시설의 건축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뷰티산업진흥원+공영주차장, 어울림플랫폼의 주 용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공공청사에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 존치시설로 계획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음	반영 [붙임9]
	• 향후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작은도서관 이설 위치 재검토(공공청사A→공공청사B)	•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용지를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9]
아동복지과	▪ 보육시설 설치 등 소관 사항(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도마・변동14구역 공동주택 내 예상 세대수는 2,690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 * 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 어린이집 설치 시,「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참조 -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진행상황을 입주자 등에게 반드시 공유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자모집 공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됨을 안내하고 지자체 협약체결 사항임을 입주자에게 안내. 지자체와 협약 체결 전에 입주자 등(입주예정자 포함)에게 지자체와 협의사항 공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됨을 안내.	• 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table>
<tr><th>협의 부서</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아동복지과</td><td>※ 기타 요청사항
- 어린이집 정원 50명 이상일 시, 옥외놀이터 설치 필수(영유아 1명당 3.5㎡)
- 보육실 구획 시 아래표를 참조하여 구획 필요(영유아 1명당 2.64㎡)
<table><tr><th>구 분</th><th>0세</th><th>1세</th><th>2세</th><th>3세</th><th>4세 이상</th></tr><tr><td>원 칙</td><td>3명</td><td>5명</td><td>7명</td><td>15명</td><td>20명</td></tr><tr><td>보육실 면적(㎡)</td><td>7.92</td><td>13.2</td><td>18.48</td><td>39.6</td><td>52.8</td></tr></table>- 주방은 넓게(개수구 크게), 바닥은 타일 등 물청소가 가능하게 화장실 세면대는 개별 설치 대신 하나로 설치(다수아이가 동시사용 가능하게)
- 공공주택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정원기준 준수 권장
(예: 500세대 이상인 단지: [50+(세대수-500)×0.02명] 이상
붙임 1.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부. · 보육시설 설치 등 소관 사항(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도마·변동14구역 공동주택 내 예상 세대수는 2,690세대로 의무설치 대상임.
* 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 설치 시 다함께돌봄센터 법정 전용면적은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나, 아동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전용면적 100㎡ 이상을 권고함.
또한 사업주체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 하기 전까지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 설치·운영과 관련 내용을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안내 하여야 함.
* 안내 내용: 설치 법적 근거,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협약체결 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 체결을 통해 설치 진행 등</td><td>• 어린이집, 보육실,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련법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abl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아동복지과	※(참고)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절차  붙임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1부.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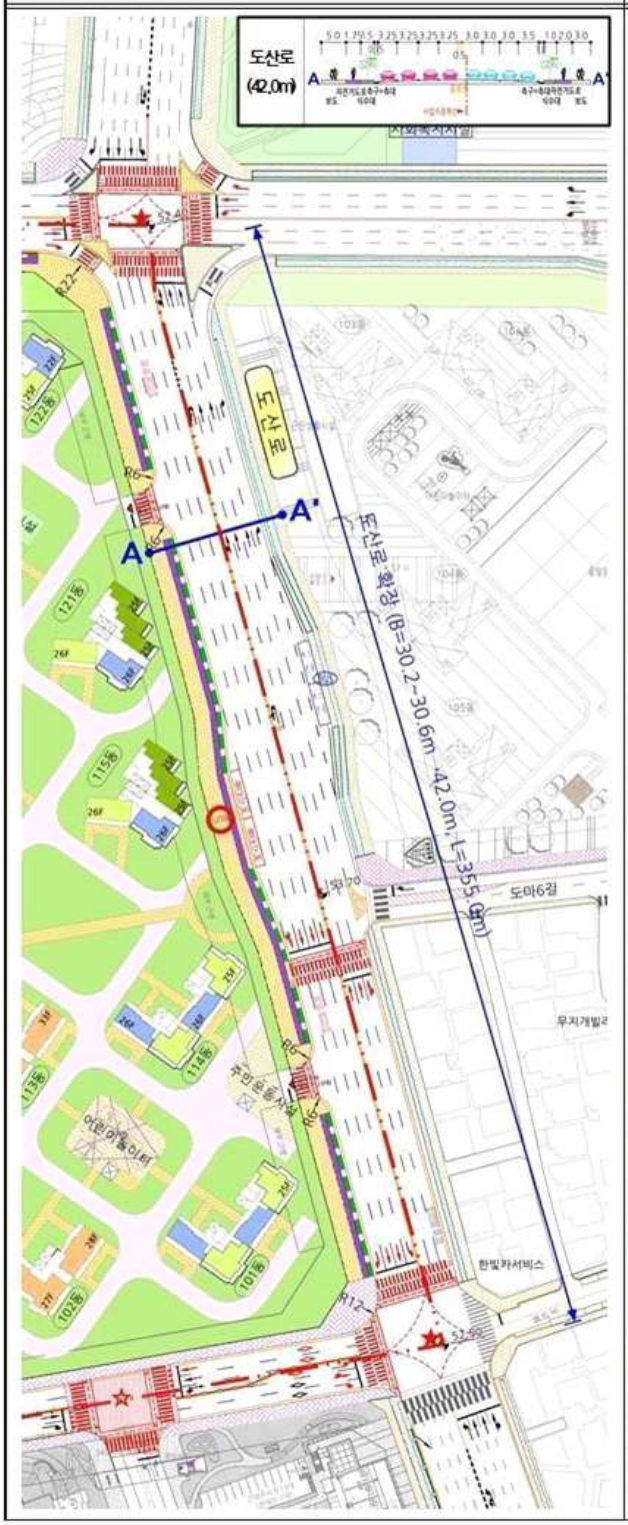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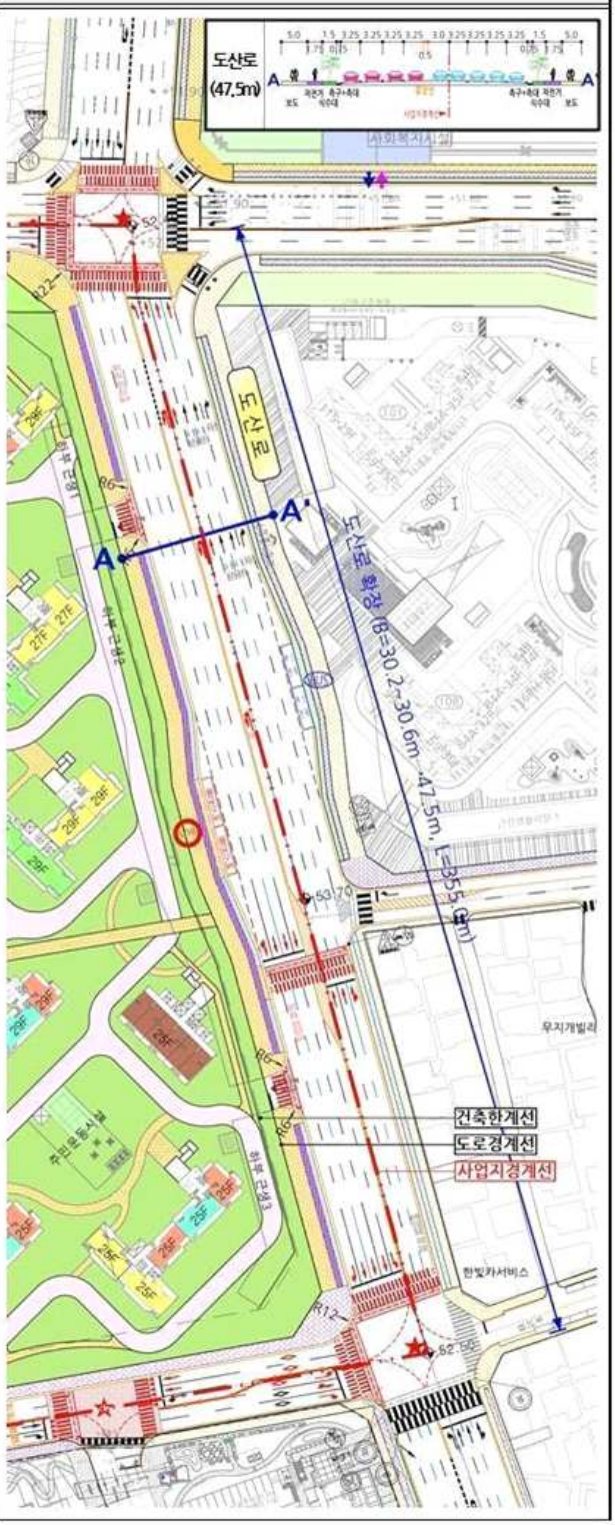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대전 경찰청 (교통과)	• 제비네1길(도솔로→유천초교 방면), 조달청길(구농도원네거리→지방조달청 방면) 차량동선 재정비필요	• 제비네1길 및 조달청길 차량동선은 주변 개발계획(도마·변동 15 및 16구역)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음	반영 [붙임1]
	• 사업지 서측 도솔로 구간 중앙선 절선 3개 지점 삭제에 따라 도솔로 서측 주민불편 우려되므로 중앙선 절선 장소에 대해 현행 유지 필요, 단 도마·변동15구역 확정에 따라 사업 시행의 시기가 비슷한 경우 기존 계획대로 시행	• 사업지 서측 도솔로 구간은 도마·변동15 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교차로를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2]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의견 없음	-	-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		
	• (초등학교) 도마·변동 16구역 내 확보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1교 신설 후 통학구역을 대전유천초에서 신설초(16구역)로 조정하여 배치 - 다만, 학생 수 증감 추이, 인근 개발사업 추진경과 등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증측, 신설 및 통학 구역 조정 등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한 인근 개발사업 관련 학생배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협의 필요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전유천초에서 도마·변동 16구역 내 신설초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학생 수 증감 추이, 인근 개발사업 추진경과 등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증측, 신설 및 통학 구역 조정 등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한 인근 개발사업 관련 학생배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 (중학교) 서부1,2학교군(공동학군) 내 분산배치할 계획임(대신중 등 10개교) - 다만, 학교군 내 대규모의 다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협의 필요	• 중학교 통학구역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서부1,2학교군(공동학군) 내 분산배치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학교군 내 대규모의 다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협의 필요	추후 반영
	• (유치원, 고등학교) 기존 권역(학교군)에 분산배치 할 계획임	• 유치원, 고등학교 통학구역은 기존 권역(학교군)에 분산배치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사업예정지가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초등학교예정지(도마·변동16구역 초등학교 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사업예정지가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초등학교예정지(도마·변동16구역 초등학교 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대상학교 : 대전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도마·변동 16구역(신설)초등학교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귀 기관과 협의하겠음 - 평가 대상학교 : 대전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도마·변동 16구역(신설)초등학교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사업예정지가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정지(도마 · 변동 16구역 초등학교 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 학교 운영 시 사업대상지 공사로 인한 소음 · 진동,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학교들의 학습권과 건강상의 피해가 예상됨 - 공사기간 동안의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 영향 예측을 통해 철저한 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학교의 학습 및 건강 피해 최소화와 작업공정 상황(철거, 공사일정, 건설장비 계획 등)을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하는 등 학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사업대상지와 대전유천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소음 · 진동, 비산먼지 등 적극적인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공사 완공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대기·소음·진동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 내 대기질과 소음·진동 발생 관련의 민원 발생 시 대책 마련 필요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사업예정지가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정지(도마 · 변동 16구역 초등학교 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음 - 학교 운영 시 사업대상지 공사로 인한 소음 · 진동,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학교들의 학습권과 건강상의 피해 최소화 - 공사기간 동안의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 영향 예측을 통해 철저한 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학교의 학습 및 건강 피해 최소화와 작업공정 상황(철거, 공사일정, 건설장비 계획 등)을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하는 등 학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사업대상지와 대전유천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소음 · 진동, 비산먼지 등 적극적인 저감 대책 마련 - 공사 완공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대기·소음·진동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 내 대기질과 소음·진동 발생 관련의 민원 발생 시 대책 마련	추후 반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사업예정지가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정지(도마 · 변동16구역 초등학교 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겠음	추후 반영
	• (위험시설)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위험시설 등”이 가급적 없어야 함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일 경우 사업 완료시까지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 학교의 학습 및 건강 피해 최소화 조치 필요 - 사업 시행 관련으로 민원 발생 시 대책 마련 필요	• (위험시설)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위험시설 등”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일 경우 사업 완료시까지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 학교의 학습 및 건강 피해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겠음 - 사업 시행 관련으로 민원 발생 시 관계기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추후 반영
	• (안전성평가) 학교용지 경계선(대전유천초)으로부터 사업구역 대지경계선의 직선거리가 약 17m로 안정성평가 대상이므로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사업시행인가 전 학교용지 경계선(대전유천초)으로부터 사업구역 대지경계선의 직선거리가 약 17m로 안정성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귀 기관과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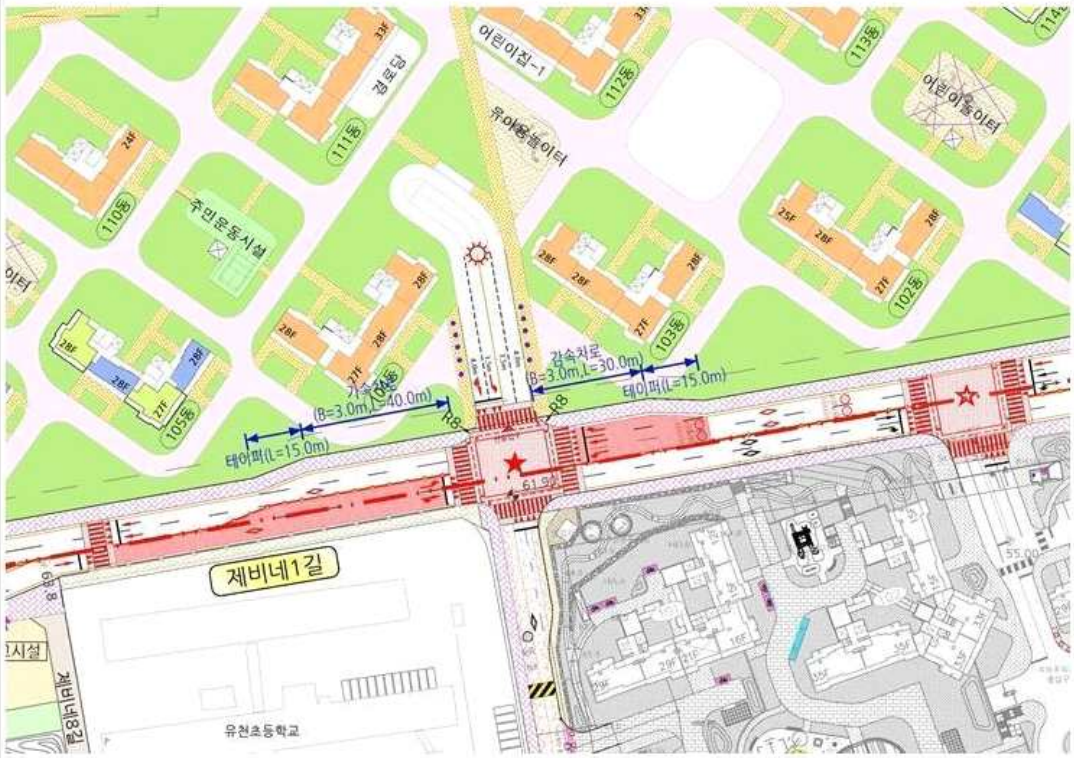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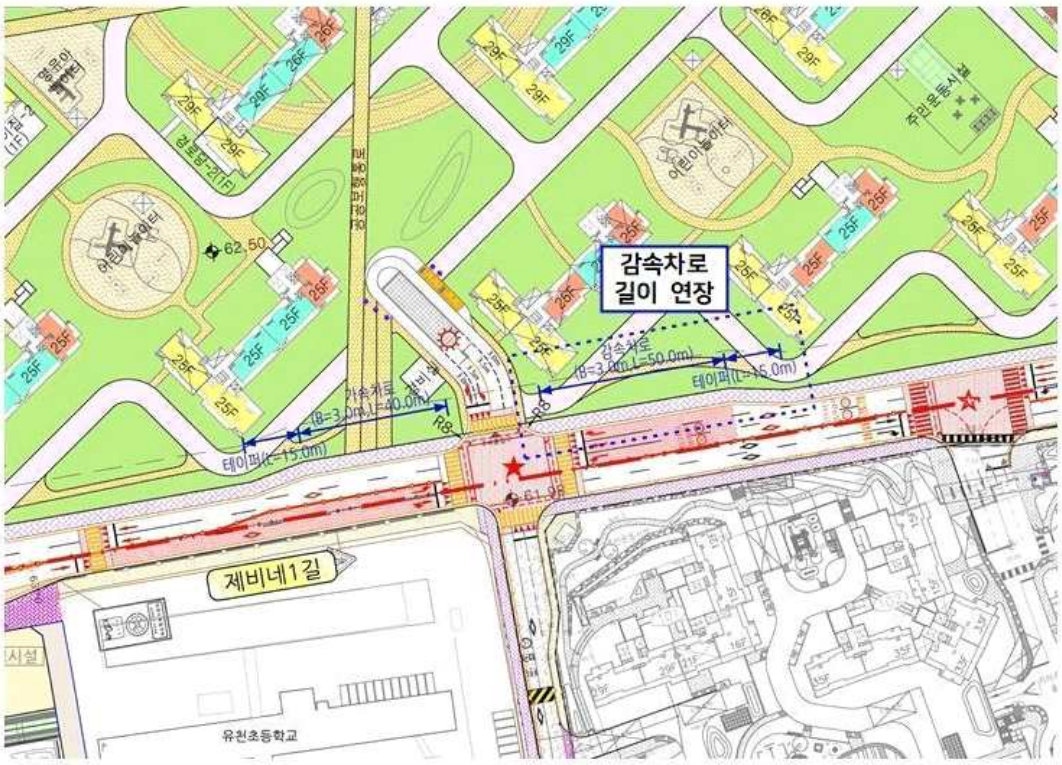
붙임 1	도솔로 차로운영계획

주민제안(안)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붙임 2	도산로 차로운영계획

주민제안(안)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붙임 3	제비네1길 완화차로 설치 계획

주민 제안(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안)	

붙임 4	도솔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계획

주민제안(안)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붙임 5	조달청길 감속차로 설치 계획

주민 제안(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안)	

붙임 6	단지내 공공보행 통로 계획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주민제안(안)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구 분	세대수	비 율
39	150	5.60 %
59	523	19.53 %
74	550	20.54 %
84	1,008	37.64 %
111	447	16.69 %
계	2,678	100.00 %

붙임 7	용적률 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안)

관계기관/부서협의 의견 조치계획(안)



구 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	증) 161,141.0	161,141.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42,994.0	42,994.0	26.6	
	도 로	-	증) 32,369.9	32,369.9	20.1	
	공 원	-	증) 4,474.8	4,474.8	2.7	소공원
	녹 지	-	증) 3,637.1	3,637.1	2.3	연결녹지
	공공공지	-	증) 353.6	353.6	0.2	
	주차장	-	증) 2,158.6	2,158.6	1.3	
택 지 (획지)	소 계	-	증) 118,147.0	118,147.0	73.4	
	14-1	-	증) 114,825.7	114,825.7	71.3	공동주택
	14-2	-	증) 2,464.7	2,464.7	1.5	종교용지
	14-3	-	증) 442.0	442.0	0.3	사회복지
	14-4	-	증) 414.6	414.6	0.3	문화시설

2. 계획기반시설

구역명	구분	구역면적(㎡)	기존기반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 면적(㎡)								순부담 면적(㎡)	비고
				계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문화시설		
도마·변동 14구역	신설	161,141.0	39,012.2	43,850.6	32,369.9	4,474.8	3,637.1	2,158.6	442.0	353.6	414.6	4,838.4	-

3. 기존기반시설

구분	명칭	지번	면적(㎡)	소유자
합 계			39,012.2	
도로	소계		32,547.6	
	중로1-3	492도	3,260.4	대전광역시
	중로2-34	485도	3,286.9	군유지
	중로2-31	494도	3,256.0	군유지
	대로2-8	496도	5,670.1	시도유지
	소로3-26 소로3-28 소로3-27 소로2-10 소로3-25 소로3-24 소로3-36 소로3-29	515도	10,279.7	군유지
	소로3-26	516도	425.5	군유지
	소로2-10 소로3-37 소로3-25	517도	2,307.8	군유지
	소로4-3	518도	1,780.5	군유지
	소로4-4	493도	1,786.4	군유지
	소로2-도마18	105-101대	288.0	군유지
	소로3-도마98	105-37대	166.1	군유지
		105-103도	3.5	군유지
		105-98도	20.9	군유지
		105-85대	15.8	군유지
도로(비 도시계획시설)	소계		3,999.1	
	-	519구	1,778.2	군유지
	사마9길	105-3도	286.8	군유지
		105-69도	4.7	군유지
	사마6길	106-5도	218.2	군유지
	-	122-28도	224.6	군유지
	-	122-34도	71.9	군유지
	-	125-10도	161.3	군유지
	-	125-33대	104.9	군유지
	-	126-17도	58.2	대전광역시
	-	126-20도	19.5	대전광역시
	-	127-18도	47.6	군유지
	-	100-10도	123.3	군유지
	-	102-8도	578.2	군유지
	-	102-33도	113.5	군유지
	-	104-3도	183.8	군유지
	-	105-76도	24.4	군유지
주차장	소계		1,142.1	
	도시계획시설	105-94차	1,142.1	군유지
공원	소계		1,323.4	
		105-8대	1,268.5	군유지
		105-105도	54.9	군유지

4. 용적률 계획

1) 기준용적률 산정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된 기준용적률 반영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비고
계	161,14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4,895.0	17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6,246.0	210.0	

- 기준용적률 산정

$$201.89\%\ (\text{기준용적률}) = \frac{(1\text{종주거 } 64{,}895.0\text{㎡}\times 170\%) + (2\text{종주거 } 96{,}246.0\text{㎡}\times 210\%)}{\text{총면적 } 161{,}141.0\text{㎡}} + \underset{\text{(사공업체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8.0\%}$$

2) 허용용적률 산정

기준 용적률(a)	기반시설재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용적률(%)	
	기반시설(㎡)			완화용적률(%)			
	계획기반시설	기존기반시설	순부담 기반시설	완화 받을수 있는 용적률	가중치 적용(b)	계획적 인센티브(c)	허용용적률 (a+b+c)
201.89%	43,850.6	39,012.2	4,838.4	12.49	12.27	35.0%	249.16%

※ 계획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문화시설(도서관)

※ 계획적 인센티브 : 35% (건축계획 변경,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업체(시공업체) 참여 15%(기준용적률 8% 상향은 기준용적률 산정 시 적용함), (녹색건축인증제 및 에너지 효율등급(5%), 소셜믹스(7%), 임대주택 건립(5%), 세입자 손실보상 (3%)

①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

=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5β) = 201.89% × (1+(1.5×0.04125146) = 214.38%

$$\beta = \frac{\text{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text{제공후 대지면적}} = \frac{43{,}850.6 - 39{,}012.2}{117{,}290.4} = \frac{4{,}838.4}{117{,}290.4} = 0.04125146$$

※ 기존 기반시설 면적 : 39,012.2㎡

※ 계획기반시설 면적 : 도로(32,369.9㎡) + 공원(4,474.8㎡) + 녹지(3,637.1㎡), 주차장(2,158.6㎡) + 사회복지시설(442.0㎡) + 공공공지(353.6㎡문)+문화시설(414.6㎡) = 43,850.6㎡

※ 제공후 대지면적 : 공동주택용지(114,825.7㎡) + 종교시설용지(2,464.7㎡) = 117,290.4㎡

② 용적률 가중치(b)

= 가중치 적용한 완화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 × 용적률 가중치

= **12.4924596% × 0.982888035 = 12.278685%**

$$= \frac{(\text{계획기반시설면적}\times\text{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text{의 합}}{\text{계획기반시설면적}} \div \text{기준용적률}$$

$$= \frac{(12676.8\text{㎡}\times 170\% + 31{,}173.8\text{㎡}\times 210\%)}{43{,}850.6\text{㎡}} \div 201.89113\% = 12.278685\%$$

③ 계획적 인센티브 반영(c)

구 분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금회 촉진계획 적용		비고
계	–		35% (기준용적률8% 상향 적용)		○ 지역 시공업체 참여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8%는 기준용적률 산정시 적용
지역업체 참여	15~20%		15% (기준용적률 8% 상향 적용)		○ 지역 시공업체 20% 참여
녹색건축인증제	2~5%	항목별 합계 최대 5%	3%	5%	
에너지효율등급	5%		5%		
조경식재	4%		–		
재활용 자재 사용	5%		–		
social-mix	3~7%		7%		
임대주택 건립	1~5%		5%		
세입자 손실보상	1~6%		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기부채납	증가용적률의 70%		–		

④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201.89)% + 완화용적률(12.27%) + 추가 인센티브(35.0%) = 249.16%(249.1% 적용)

붙임 8	임대주택 계획(안)

1. 임대주택 건립 기준

관 련 규 정	건 립 기 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2012-59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조례 제20조	•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 임대주택 건설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의 5.0% 및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를 합한 값 이상을 임대주택 평형 공급(60㎡)	

2. 임대주택 계획(안)

□ 14구역 임대주택 계획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2012-59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2,678세대 × 5%

= 134세대 이상

②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조례 제21조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재개발사업)

구분	촉진계획 용적률	지정당시 용적률	부지제공 용적률	증가 용적률	임대주택 공급용적률	대지면적	임대주택 공급연면적
증가용적률 산정	249.1%	193.89%	12.27%	42.9%	4.29%	114,825.7㎡	4,930.62㎡

= 증가용적률의 10% 이상(4,930.62㎡)

- 공급면적(61.26㎡ × 16세대 = 980.16㎡)
- 공급면적(80.67㎡ × 49세대 = 3,952.83㎡)
- 임대주택 공급 4,932.99㎡, 65세대

③ 14구역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 임대주택세대수

=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2012-59호)] + ②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증가용적률의 10%]

= 134세대 이상 + 65세대 이상

= 199세대 이상 계획(199세대 계획)

붙임 9	토지이용계획(안)

주민제안(안)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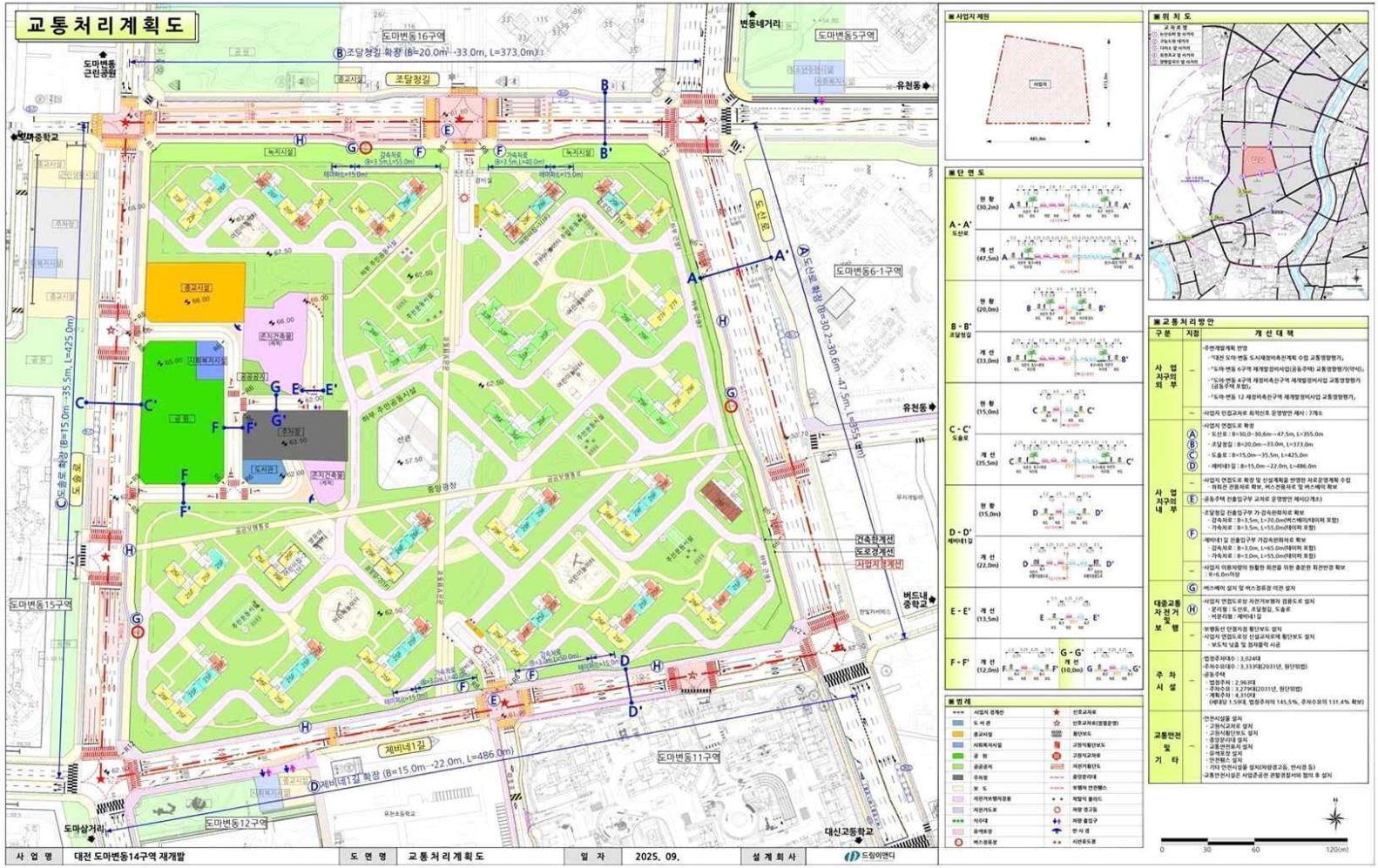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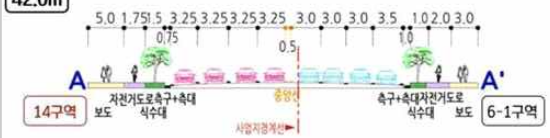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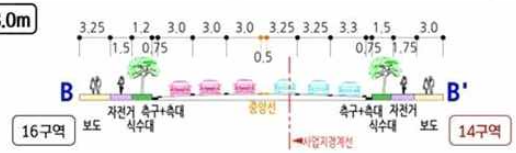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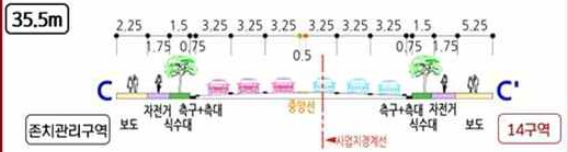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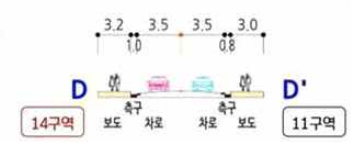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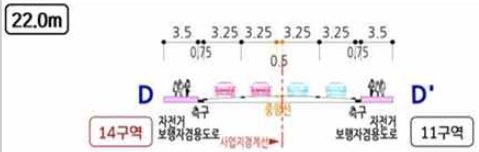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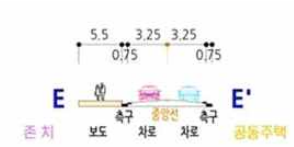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주민제안(안)	변경	협의의견 조치계획(안)		
합계		163,818.0	감) 2,677.0	161,141.0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40,237.8	증) 2,756.2	42,994.0	26.6	
	도로	29,638.6	증) 2,731.3	32,369.9	20.1	
	공원	4,641.4	감) 166.6	4,474.8	2.7	
	녹지	3,674.3	감) 37.2	3,637.1	2.3	
	공공공지	-	증) 353.6	353.6	0.2	
	주차장	2,283.5	감) 124.9	2,158.6	1.3	
택지	소계	123,580.2	감) 5,433.2	118,147.0	73.4	
	공동주택	114,079.5	증) 746.2	114,825.7	71.3	
	종교용지	2,464.7	-	2,464.7	1.5	
	사회복지시설	442.0	-	442.0	0.3	
	공공청사(뷰티+도서관)	4,529.6	감) 4,115.0	414.6	0.3	
	공공청사(어울림)	2,064.4	감) 2,064.4	-		

※ 뷰티산업진흥원(직주락) 및 어울림센터 존치 / 구역에서 제척

붙임 10	교통처리계획(안)

교통처리계획도_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반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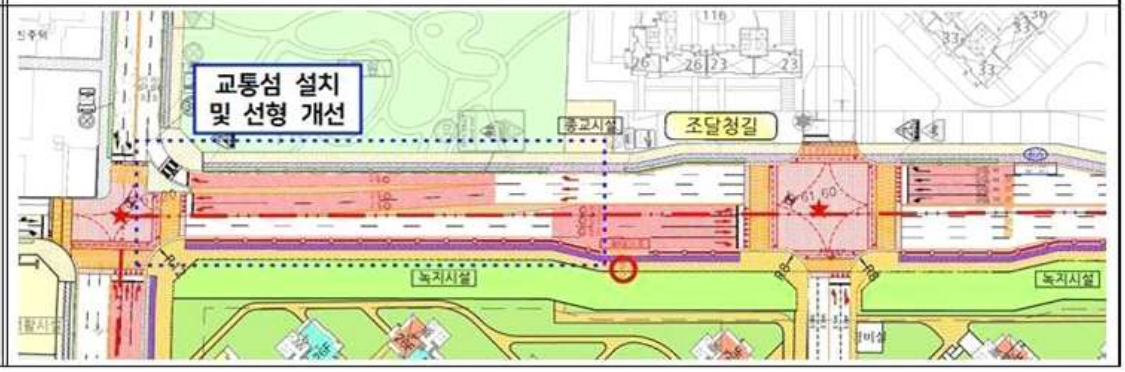
	현 황	주민제안(안)	조치계획(안)
도산로	30.2m 	42.0m 	47.5m 
조달청길	20.0m 	33.0m 	33.0m 
도솔로	15.0m 	25.0m 	35.5m 
제비네1길	15.0m 	22.0m 	22.0m 
사업지내		12.0m 	13.5m 
사업지내		8.0m 	12.0m 
사업지내			10.0m 

붙임 11	제비네1길, 조달청길 운영 계획

■ 제비네1길

주민 제안(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안)	

■ 조달청길

주민 제안(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안)	

붙임 12	도솔로 현황 중앙선 절선에 따른 운영 계획

현황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안)



나. 관계기관(부서) 재협의

○ 협의기간 : 2025년 10월 14일(화) ~ 2025년 11월 11일(화)

○ 관계기관(부서) : 36개 부서(대전시 20, 서구 16) / 3개 기관(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결과 : 총 의견 50건(반영 3건, 추후반영 46건, 미반영 1건)

○ 협의결과 총괄

구 분			총계	반영	추후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고
합 계		36개 부서 / 3개 기관	50	3	46	-	1	-
관계부서	대전광역시 (20개부서)	자연재난과	-	-	-	-	-	-
		에너지정책과	-	-	-	-	-	-
		문화유산과	-	-	-	-	-	-
		노인복지과	-	-	-	-	-	-
		환경정책과	-	-	-	-	-	-
		수질개선과	-	-	-	-	-	-
		자원순환과	5	-	5	-	-	-
		산림녹지정책과	-	-	-	-	-	-
		공원수목원과	1	1	-	-	-	-
		교통정책과	2	1	-	-	1	-
		아동보육과	-	-	-	-	-	-
		철도정책과	2	-	2	-	-	-
		건설도로과	-	-	-	-	-	-
		도시정비과	-	-	-	-	-	-
		도시경관과	-	-	-	-	-	-
		주택정책과	-	-	-	-	-	-
		회계재산과	2	-	2	-	-	-
		상수도사업본부	-	-	-	-	-	-
		토지정보과	28	-	28	-	-	-
		건설관리본부	-	-	-	-	-	-
	서구 (16개부서)	재난안전과	-	-	-	-	-	-
		기획예산과	-	-	-	-	-	-
		기후환경과	-	-	-	-	-	-
		공원녹지과	-	-	-	-	-	-
		공동주택과	-	-	-	-	-	-
		건설과	-	-	-	-	-	-
		교통과	1	-	1	-	-	-
		주차행정과	-	-	-	-	-	-
		토지정보과	-	-	-	-	-	-
		노인장애인과	1	-	1	-	-	-
		문화체육과	-	-	-	-	-	-
		아동복지과	-	-	-	-	-	-
		공공건축과	4	-	4	-	-	-
		도서관운영과	-	-	-	-	-	-
		도시계획과	-	-	-	-	-	-
		도시정비과	3	1	2	-	-	-
관계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행정과)		1	-	1	-	-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	-	-	-	-
	대전경찰청(교통과)		-	-	-	-	-	-

○ 대전광역시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자연재난과	• 의견없음	-	
에너지정책과	• 의견없음	-	
문화유산과	• 의견없음	-	
노인복지과	• 의견없음	-	
환경정책과	• 의견없음	-	
수질개선과	• 의견없음	-	
자원순환과	• 공사시공 관련 발생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한 배출자 신고 및 보관·운반·처리기준 준수. - 배출자 신고는 관할 구청에 신고처리 -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재활용 할 것	• 추후, 공사시공 관련 발생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한 배출자 신고 및 보관·운반·처리기준을 준수하겠음. - 배출자 신고는 관할 구청에 신고처리 -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재활용 할 것	추후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38조의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38조의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음.	추후 반영
	• 공동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RFID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권고기준 : 70세대 당 종량기 1대) *RFID방식 종량기란 : 전파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출자를 인식하여,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기기	• 공동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RFID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하겠음. (권고기준 : 70세대 당 종량기 1대) *RFID방식 종량기란 : 전파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출자를 인식하여,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기기	추후 반영
	• 폐형광등, 폐건전지,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설치. - 폐형광등 배출이 용이하도록 폐건전지 수거함이 포함된 전용수거함설치(공동주택 부분) -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출입구 우편함 1개를 수거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찰 부착 (공동주택부분) -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수거장소 확보 및 수거함 고정식 설치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별도 설치 (2020.12.25. 의무시행) - 플라스틱류, 비닐류,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종이류, 발포합성수지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함 설치	• 추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폐형광등, 폐건전지,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설치하고, 자치구 환경부서와 협의하겠음. - 폐형광등 배출이 용이하도록 폐건전지 수거함이 포함된 전용수거함설치(공동주택 부분) -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출입구 우편함 1개를 수거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찰 부착 (공동주택부분) -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수거장소 확보 및 수거함 고정식 설치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별도 설치 (2020.12.25. 의무시행) - 플라스틱류, 비닐류,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종이류, 발포합성수지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함 설치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자원순환과	- 가정에서 배출되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처리 편의를 위한 전용수거함 설치(공동주택부분) ※ 공동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환경부서와 협의 요망	- 가정에서 배출되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처리 편의를 위한 전용수거함 설치(공동주택부분)	
	• 재활용 분리수거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 - 분리수거장은 가급적 옥외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여건상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며 화재감시를 위한 CCTV, 소화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지상·지하)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금지 -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절대로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 안내	• 추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하겠음. - 분리수거장은 가급적 옥외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여건상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며 화재감시를 위한 CCTV, 소화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지상·지하)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금지 -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절대로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 안내	추후 반영
산림녹지정책과	• 의견없음		
공원수목원과	• 인근 어린이 및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이 배치 가능하도록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유형 변경.	•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유형 변경하겠음	반영
교통정책과	• 도서관 남측에서 주차장 부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불필요한 막다른 도로가 연장되어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변경 검토.	• 도서관 남측부 도로는 주차장 1층 출입 및 어울림플랫폼(존치 건축물) 진입을 위한 도로로 삭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 종교시설, 존지건축물 등 가각부에 안전지대는 보도채움.	• 종교시설, 존지건축물 등 가각부에 안전지대는 보도로 결정하였음.	반영
아동보육과	• 의견없음	-	
철도정책과	• 도마·변동14구역 내 도산로에 도시철도 5호선이 포함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 도산로는 대상지 인근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16,4,5,6-1 구역 등)의 도산로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한 사항으로 도시철도 5호선 구축계획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며, • 구체적인 도산로 도로계획은 추후, 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행 시 귀 부서와 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기타 변경사항 발생 시 재협의 바람	• 추후, 도마변동14구역과 연접한 도산로계획 변경 시 귀 부서와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건설도로과	• 의견없음	-	
도시정비과	• 의견없음	-	
도시경관과	• 의견없음	-	
주택정책과	• 의견없음	-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회계재산과	• 현재 사업구역내 시 소유 일반재산은 없으나, 추후 사업지구 변경 등으로 시 소유일반재산이 포함될 경우 별도 협의 바랍니다.	• 사업지구 변경 등으로 시 소유일반재산이 포함될 경우 별도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 또한, 행정재산 중 행정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대상 토지는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별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행정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대상 토지는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별도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상수도사업 본부 (급수과)	• 의견 없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분야]		
	•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적(地籍)부서에 통보.	•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적(地籍)부서에 통보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관련] _ 「공간정보관리법 」 제86조, 「토지개발사업 등기규칙」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착수·변경) 및 완료 신고 이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임.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 추후,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서구 토지정보과에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준수 - 착수 신고 완료된 지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지구계 분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 -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문 등에 따라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함.	• 추후, 사업시행 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를 준수하겠음. - 착수 신고 완료된 지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지구계 분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하겠음 -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문 등에 따라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겠음	추후 반영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 구비 -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토지개발사업의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할 것 2.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 다른 등기가 없을 것 3.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 작성될 것	• 추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 전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 구비하겠음. -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토지개발사업의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할 것 2.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 다른 등기가 없을 것 3.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 작성될 것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정보과	[지적분야_지구계 설정 관련] _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		
	• 지구계 확정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제출(공사 착공 前)	• 추후, 공사 착공 前 지구계 확정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승인 받은 인·허가선으로 사업지구 편입토지 및 경계를 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상경계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지구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지구경계선 내·외가 겹치거나 벌어질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 추후, 예정지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지상경계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지구 편입 확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확한 시공을 위해 예정지적좌표 작성	• 추후, 사업지구 편입 확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확한 시공을 위해 예정지적좌표를 작성하겠음.	추후 반영
	-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는 반드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에 반드시 제출 후 성과결정(기준점 또는 현형법) 적정 여부에 대한 협의 후 사용	• 추후, 예정지적좌표는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후 성과결정 적정 여부에 대한 협의 후 사용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적좌표 작성으로 사업계획(안) 변경에 따른 문제점(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 추후, 예정지적좌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안) 변경에 따른 문제점(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지적확정측량 관련] _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7조, 제14조 내지 제1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의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추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의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겠음.	추후 반영
	-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세부측량(지구계점, 필계점 결정)을 위하여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설치 ※ 위성신호 수신이 양호하고 성과가 안정적일 경우 '다중기준국 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가능	• 추후, 지적확정측량 시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세부측량(지구계점, 필계점 결정)을 위하여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지구경계선에 사업지구 내·외 구조물 등이 침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 사업시행자(지적측량수행자)는 경계 및 지목설정 등 지적확정과 관련하여 사전검토(지적소관청 경유)를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지구경계선에 사업지구 내·외 구조물 등이 침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하겠음.	추후 반영
	- 현장여건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경계에서 옹벽 등의 구조물을 후퇴하여 공사 시행한 경우 잔여 토지는 별도의 필지로 구획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한 후 확정측량 가능 ※ 특히, 인접 임야와 접하는 공원의 경계가 숲이 우거져 지구계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이 불가하므로 조치 필요	• 추후, 현장여건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경계에서 옹벽 등의 구조물을 후퇴하여 공사 시행한 경우 잔여 토지는 별도의 필지로 구획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한 후 확정 측량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정보과	- 예정지적좌표 등으로 승인된 사업면적은 사업지구 내 공사완료 현황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으로 그 면적이 변동될 수 있기에 사업시행자는 획지, 기반시설 등의 사업승인 면적을 맞추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사 현황과 다르게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측량성과 요구 금지	• 추후, 확정측량 시 예정지적좌표 등으로 승인된 사업면적은 사업지구 내 공사완료 현황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으로 그 면적이 변동될 수 있기에 사업시행자는 획지, 기반시설 등의 사업승인 면적을 맞추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사 현황과 다르게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측량성과 요구 금지하겠음.	추후 반영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부예규 제438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24조(성과검사)에 의하여 성과검사는 사업지구 면적이 20,000㎡를 초과할 경우 市 토지정보과로,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요청 요함	• 추후,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준수하여 市 토지정보과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요청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필지 구획 및 지목 설정 관련] _「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9조		
	• 공사 현황에 따른 필지 구획 및 지목 설정 -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의 용지가 사업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현황으로 필지 구획 및 지목 설정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측량된 지적확정성과가 공사완료 현황과 불일치할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조치하여야함.	• 추후, 공사완료 현황으로 필지 구획 및 지목을 설정하겠음.	추후 반영
	- 도시계획시설 결정과는 별도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이 가구 및 획지 내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용상황에 따라 별도의 필지로 구획될 수 있음. (건축한계선, 용적률 및 건폐율 문제 발생)	• 추후, 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는 별도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이 가구 및 획지 내에 설치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귀 부서와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 도로의 경계는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된 연석(경계석)까지 설정하여야 하므로, 연석 등이 공동주택용지 및 녹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에 반영 ※ 기타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은 후면의 [경계설정 예시] 참조 (시행령 제55조제1항)	• 도로의 경계는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된 연석(경계석)까지 설정하고 연석 등이 공동주택용지 및 녹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 동일 지목 토지에 대한 세부 목적별 필지 구획 -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필지로 구획 ※ 기반시설(대로-중로-소로)	• 추후, 동일 지목 토지에 대한 세부 목적별 필지를 구획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준공 전 지번부여 관련] _「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		
	• 준공 전 확정예정지번 협의 (사업시행인가 後) - 사업 준공 후 지번 부여 시 각종 공부(등기) 정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할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과 협의하여 준공 전 지번 부여 협의	• 준공 전 확정예정지번 협의 (사업시행인가 後)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정보과	[지적분야_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관련] _「공간정보관리법」 제85조		
	• 확정측량 전 행정구역 변경 검토 철저 - 당해 사업지구가 불합리한 행정구역(법정동)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시민의 재산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변경 검토	• 금회 사업대상지의 행정구역은 도마동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나, 확정측량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 지적기준점 관리 관련] _「공간정보관리법」 제9조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재설치 등 협의 (사업시행인가 後, 공사 착공 前) - 지적기준점이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가 공사 착수 전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과 미리 협의 후 공사하여야 함 ※ 복합측량기준점의 경우 市 토지정보과와 협의	• 추후, 공사 착수 전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등에 관하여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미리 협의(사업시행인가 後, 공사 착공 前) 후 공사를 진행하겠음.	추후 반영
	- 지적기준점 망실 또는 이전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지적기준점 망실 또는 이전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분야_ 부동산종합공부 전산 자료 제공 관련] _「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활용 - 지역·지구 등의 결정(변경)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 - 지역·지구 등의 지정효력 발생(민원발급)을 위한 전산 자료 정리는 지적소관청(구청 토지정보과)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	• 지역·지구 등의 결정(변경)은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공문 협조를 요청하여 작성하겠음.	추후 반영
	[주소융합분야]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 「도로명주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 및 주소융합 관련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추후, 금회 사업으로 인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 및 주소융합 관련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대전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도로명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시행자는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추후, 금회 사업으로 인해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등이 필요할 경우 대전시 서구청장에게 신청하겠음.	추후 반영
	[지적재조사분야]		
	•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보상(토지, 건물, 임목 등)을 위하여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의하여 市 토지정보과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망.	• 추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보상(토지, 건물, 임목 등)을 위하여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의하여 市 토지정보과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겠음.	추후 반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시 토지수용위원회 사전 검토 후 신청서 제출 요함.	• 추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시 토지수용위원회 사전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건설본부 (시설장비과)	• 의견없음	-	

○ 서구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재난안전과	• 의견없음	-	
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기후환경과	• 의견없음	-	
공원녹지과	• 의견없음	-	
공동주택과	• 의견없음	-	
건설과	• 의견없음	-	
교통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개발사업(부지면적 5만㎡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3만6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기 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반영
주차행정과	• 의견없음	-	
토지정보과	• 의견없음	-	
노인장애인과	• 조치계획에 따른 당초 협의 조건 준수 요함(당초협의조건) - 사회복지시설부지내 기존경로당 규모이상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설치(기부채납/설치제공) - 재개발기간 중 임시 사용 경로당 확보(인근주택 임대 등)	• 추후, 사업시행 시 당초 협의 조건을 준수하겠음	추후반영
문화체육과	• 의견 없음	-	
아동복지과	• 의견 없음	-	
공공건축과	•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로서 市에 감리원 배치 신고 철저	•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 시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반영
	• 착공전 감리용역업자 선정 후 해당감리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세부 기술기준 검토 추진.(홈 네트워크 보안,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설비 등)	• 착공전 감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반영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별표 준용<시행 2024.7.19.>	• 방송통신설비 설치 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추후반영
	• 공동주택지 및 단독주택용지 인근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용이하도록 전기, 통신 배관 협의 별도 추진.	• 추후, 사업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시 전기, 통신 배관협의를 별도로 추진하겠음.	추후반영
도서관운영과	• 의견 없음	-	
도시계획과	• 의견 없음	-	
도시정비과	• 구역 내 각 획지의 용적률 건폐율 계획이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 후 제출	• 용도지역에 부합하도록 종교용지 건폐율(60%→50%), 용적률(200%→250%)을 조정하였음.	반영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는 보행공간 확보 보행로변 휴식공간 등 조성하도록 하고 담장 및 계단, 주차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설계할 것.	•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는 보행공간 확보 보행로변 휴식공간 등 조성하도록 하고 담장 및 계단, 주차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설계하겠음.	추후반영
	• 향후, 대전광역시에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도마·변동14구역 기본계획 변경 적용 사항 검토 진행	• 추후, 대전광역시에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도마·변동14구역 기본계획 변경 적용 사항을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 유관기관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대전 경찰청 (교통과)	• 의견없음	-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 의견없음	-	

다. 관계기관(부서) 추가협의

○ 협의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 2025년 11월 28일(금)

○ 관계기관(부서) : 4개 부서(대전시 3, 서구 1)

○ 협의결과 : 총 의견 16건(추후반영 16건)

○ 협의결과 총괄

구 분			총계	반영	추후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고
합 계		4개 부서	16	-	16	-	-	-
관계부서	대전광역시(3개부서)	생태하천과	1	-	1	-	-	-
		보행자전거과	5	-	5	-	-	-
		교통시설과	-	-	-	-	-	-
	서구(16개부서)	자원순환과	10	-	10	-	-	-

○ 대전광역시

<table>
<tr><th>협의 부서</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생태하천과</td><td>• 서구 도마동 102-27번지 일원의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의한 관리 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오니 인허가 전에 우리 부서(생태하천과)로 수질오염총량(부하량 할당)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d>•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귀부서와 수질오염총량을 협의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rowspan="3">보행자전거과</td><td>•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보관소) 설치 및 주차대수 확보하고,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및 보안장치 등을 함께 설치</td><td>• 추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보관소) 설치 및 주차대수 확보하고,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및 보안장치 등을 함께 설치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r><td>•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교통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계획
- 볼라드, 횡단보도 주변 등 점자블록 설치 계획
- 횡단보도 턱낮춤은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 전체 폭만큼 낮추고 보도와 차도간 단차 없이 조성(단차높이 : 0cm) 등
-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접속부, 교차로, 시·종점 등 자전거도로와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포장
* 상충 구간 표준색: 5R 3/4(암적색)
- 자전거 횡단도의 자전거 노면표시와 도로 유형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토록 도면에 명시</td><td>• 추후,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교통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겠음.
-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계획
- 볼라드, 횡단보도 주변 등 점자블록 설치 계획
- 횡단보도 턱낮춤은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 전체 폭만큼 낮추고 보도와 차도간 단차 없이 조성(단차높이 : 0cm) 등
-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접속부, 교차로, 시·종점 등 자전거도로와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포장
* 상충 구간 표준색: 5R 3/4(암적색)
- 자전거 횡단도의 자전거 노면표시와 도로 유형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토록 도면에 명시</td><td>추후 반영</td></tr>
<tr><td colspan="3">「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표7-7> 참고
<표 7-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기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시설 구분 / 설치간격 도시지역 / 설치간격 지방지역 / 적용표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시 분리 200m 400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시 비분리 200m 400m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구간 노면표시 100m
<그림 7-8>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설치 예시도</td></tr>
</table>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보행 자전거과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분리형 설치가 우선 원칙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D단면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설치 검토 후 통합심의 시 재협의	• 추후, 통합심의 시 D단면의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분리형 설치 검토 후 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용자전거 보관소 설치 - 설치 위치는 각 보관소의 적정한 세부 위치 확보 후 우리 시(보행자전거과/T.270-6341)와 협의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공용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버스·택시 정류장,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및 교차로 인근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검토 후 별도 협의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버스·택시 정류장,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및 교차로 인근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는 「도로교통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검토 후 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교통시설과	• 의견없음	-	

○ 서구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자원순환과	[지원정책]		
	• 공동주택 단지 및 상가, 종교시설 등을 설계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의 사이즈를 반영하여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또한 수거차량의 수거 노선 방향은 시계방향으로 하되 U자형 회전을 피하도록 단지(시설) 내 진출입로를 설계하여 차량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경제적·업무적 효율을 높여야 함.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의 동선 등 진출입로 설계에 대해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재활용]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따라 수거차량의 접근과 수거의 안정성을 위해 지상에 별도 배출장소를 확보 및 자동상차수거함 구매 필요. - (참고) 수집운반 차량 사이즈 : (전폭)2,495mm×(전장)11,620mm×(전고)3,600mm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폐지류, 종이팩류, 플라스틱류, 병류, 캔(고철)류, 투명페트병, 폐형광등, 폐건전지 설치 권장)	• 추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대전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전용수거용기(120리터) 설치 및 수거 가능 장소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대전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종량기기(70세대당 1대) 설치.	• 추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종량기기(70세대당 1대)를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건설 PP마대 배출을 위해 세대수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 동별 공용 배출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 가능하여야 함.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건설 PP마대 배출을 위한 공간에 대해 귀 부서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사업장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에서 완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함.	• 추후,「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에서 완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후, 공사 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자원순환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 전에 지정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 전에 지정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추후,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